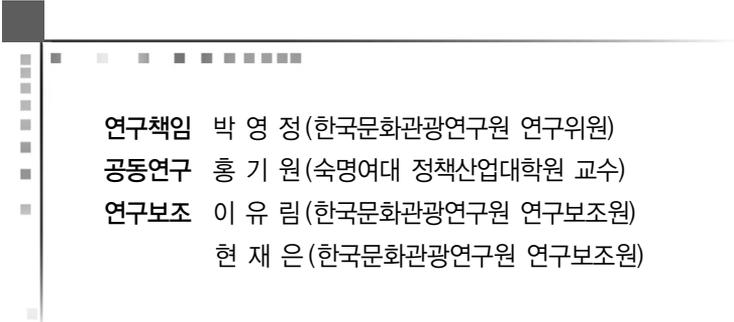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박영정



연구책임 박 영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홍 기 원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연구보조 이 유 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현 재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서 문

지난 5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문화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14년 시행 예정인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국가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하반기 기본과제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적 범위와 구성 체계, 수립 절차 등에 기초적인 설계(안)을 마련한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다른 국가 기본계획 사례 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지향할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향후 차수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연구개요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문화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4년도를 시작 연도로 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 이 연구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격과 방향, 내용 및 구성 체계, 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 체계 등을 설계하여 2014년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법에 준하는 제도적 효력을 갖는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 분야 국가 계획으로서 최상위계획의 기능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 범위를 넘어선 범부처 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짐.

- 셋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중기 계획으로서 문화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며, 중기 문화정책의 제시를 통해 문화정책 관련 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성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함.
- 넷째, 내용적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지침으로서 기능을 함.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가.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명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3년 10월 21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 문화정책 전문가
- 조사표본 : 60명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55건과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회송된 5건 등 회수된 응답 60건(회수율 100%) 중 유효한 응답 60건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함.
- 조사방법 : 이메일로 설문 안내문을 보낸 후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www.dooit.co.kr)으로 링크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사용
- 조사항목 : ‘문화진흥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인식 등 총 11문항

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8.3%(35명), ‘필요하다’는 응답이 35.0%(21명)로 절대다수인 전체의 93.3%(56명)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8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립되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는 응답은 16.7%(10명)에 불과하여 높은 기대수준을 나타냄.
- 「문화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제시된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문화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이 31.7%(1순위 응답 집계),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28.3%(1순위 응답 집계)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문화·여가시설 등의 조성 and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 and 활용, 문화자원의 개발 and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 and 조성,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 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 「문화기본법」 제9조에 제시된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음.

〈표 1〉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1순위 집계)

순위	항 목	빈도(명)	백분율(%)
1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19	31.7
2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17	28.3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8.3
4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6.7
5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6.7
6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3	5.0
7	문화예술의 진흥	3	5.0
8	문화 인력의 양성 and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3.3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 and 개발에 관한 사항	1	1.7
10	국어의 발전 and 보전	1	1.7
11	문화산업의 진흥	1	1.7
합계		60	100.0

4.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법정계획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의 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범부처 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행정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문화진흥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함.
 - 셋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서 전략적 방향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 넷째,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비롯한 문화적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로 보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그 가치가 스며들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섯째, 문화진흥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문화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의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목표는 「문화기본법」 제정 목적의 정책적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국가 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확정·공표된 세부추진과제의 연 단위 시행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기본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에 제시된 20개 항목을 모두 포괄해야 함.
- 정책 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문화진흥의 업무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가칭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에서 계획의 방향, 과제의 선정 및 조정, 최종계획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계획을 확정하여 공표
- 계획안 초안의 작성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의뢰하여 마련
-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된 문화진흥 세부추진과제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합하여 종합화된 ‘시행계획’으로 발표

5. 결론 및 제언

-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은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해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법정계획으로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면 국민의 문화권 신장 등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 국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본법」에 계획의 수립 과정에 필요한 주요 사안의 심의 및 조정, 최종계획안의 확정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범부처 국가계획으로서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따라서 향후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기본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미비한 법적 규정의 보

완이 필요함.

-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문화 진흥(국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을 통한 문화국가 형성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2장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문화진흥의 방향	9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성격	11
1. 계획의 개념과 기본계획의 특성	11
2.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관계	15
3.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16
제2절 ‘문화진흥’의 개념과 정책 방향	17
1. ‘문화진흥’의 개념	17
2.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19
제3장 국내외 기본계획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3
제1절 국내 타정책분야 기본계획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5
1. 국내 타정책 분야 기본계획 사례 현황	25
2. 사례1-사회보장 기본계획	26
3. 사례2-여성정책 기본계획	35
4. 사례3-외국인정책 기본계획	43
5. 사례4-관광개발 기본계획	51
6. 타정책분야 기본계획 사례 시사점	58
제2절 문화정책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60
1. 문화 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 현황	60
2. 국내사례1-문화재 기본계획	62
3. 국내사례2-국어발전 기본계획	67
4. 국내사례3-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71

5. 국내사례4-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77
6. 국내사례5-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82
7. 외국사례-일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87
8. 문화정책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94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96
1. 설문조사 개요	96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97
3. 설문조사 시사점	113
제4장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115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17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117
2. 계획 수립의 목표	119
제2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및 구성 체계	120
1.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	120
2.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125
제3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128
1.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128
2.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134
제5장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135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137
제2절 문화진흥 시행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143
제6장 결론 및 제언	147
참고문헌	151
ABSTRACT	154
부록.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157

표 차례

〈표 3-1〉 기본계획 시행 주기별 현황25

〈표 3-2〉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교26

〈표 3-3〉 사회보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27

〈표 3-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추진 과제30

〈표 3-5〉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36

〈표 3-6〉 여성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37

〈표 3-7〉 여성정책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38

〈표 3-8〉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40

〈표 3-9〉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44

〈표 3-10〉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46

〈표 3-11〉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25인)50

〈표 3-12〉 관광개발 기본계획 추진 현황51

〈표 3-13〉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52

〈표 3-14〉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53

〈표 3-15〉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56

〈표 3-16〉 문화 분야 법정계획 증별 현황60

〈표 3-17〉 문화 분야 법정계획 분야별 현황61

〈표 3-18〉 문화재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62

〈표 3-19〉 문화재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63

〈표 3-20〉 문화재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64

〈표 3-21〉 제2차 문화재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65

〈표 3-22〉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67

〈표 3-23〉 ‘국어발전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68

〈표 3-24〉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70

〈표 3-25〉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72

〈표 3-26〉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72

〈표 3-27〉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73

〈표 3-28〉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75

〈표 3-2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78

〈표 3-30〉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78

CONTENTS

〈표 3-31〉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79
〈표 3-32〉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80
〈표 3-33〉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83
〈표 3-34〉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83
〈표 3-35〉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84
〈표 3-36〉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86
〈표 3-37〉 일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 관련 법률 조항	88
〈표 3-38〉 일본 제3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의 내용 체계	93
〈표 3-39〉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문항	96
〈표 3-40〉 설문조사 응답자 속성	97
〈표 3-41〉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8
〈표 3-42〉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효과	99
〈표 3-43〉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는 ‘문화’의 개념적 범위	100
〈표 3-44〉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1순위 집계) ·	101
〈표 3-45〉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 (1~3순위 종합 집계)	102
〈표 3-46〉 문화진흥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류방식	103
〈표 3-47〉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관계 설정	104
〈표 3-48〉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105
〈표 3-49〉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방식	106
〈표 3-50〉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적 기여도	110
〈표 4-1〉 「문화기본법」상 ‘문화’의 정의	120
〈표 4-2〉 문화정책의 영역 구분	121
〈표 4-3〉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123
〈표 4-4〉 타부처 문화정책 영역 및 부처 간 문화 분야 협력사업	124
〈표 4-5〉 「문화기본법」상 문화정책 내용의 분야별 재배치	126
〈표 5-1〉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	137
〈표 5-2〉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138
〈표 5-3〉 「여성발전 기본법」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139
〈표 5-4〉 「건강가정 기본법」의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139
〈표 5-5〉 「국어 기본법」의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140
〈표 5-6〉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42

〈표 5-7〉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시행계획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 ...143

〈표 5-8〉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144

〈표 5-9〉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의 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144

〈표 5-10〉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145

〈표 5-11〉 계획수립 협조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146

그림 차례

[그림 3-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35

[그림 3-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42

[그림 3-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49

[그림 3-4]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67

[그림 3-5]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71

[그림 3-6]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77

[그림 3-7]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82

[그림 3-8] 일본 문화심의회 구성도90

[그림 3-9]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98

[그림 3-10]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효과99

[그림 3-11]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는 ‘문화’의 개념적 범위100

[그림 3-12] 문화진흥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류방식103

[그림 3-13]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관계 설정104

[그림 3-14]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105

[그림 3-15]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방식106

[그림 3-16]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적 기여도109

[그림 4-1] 중앙행정기관 기구표(2013)122

[그림 4-2] 문화진흥 기본계획 구성 체계(안)127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문화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복지·환경·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였음.¹⁾
- 이번 「문화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12.10)

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제8조)에서는 정부가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화기본법

-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4년도를 시작연도로 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격과 방향, 내용 및 구성 체계, 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 체계 등을 설계하여 2014년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년 이후 문화기본법 시행 기간
- 공간적 범위 : 전국적 범위(대한민국)
- 대상적 범위 :
 -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문화기본법」에 의거한 문화 분야
 - 국가계획에 한정하되 지방계획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고려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문화기본법」에 제시된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타 부처 소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자료와 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명: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3년 10월 21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문화정책 전문가 60명
- 조사 내용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 계획의 범위와 내

용 체계, 계획 수립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제1차 자문회의

- 일시 : 2013년 10월 8일 10:00-12: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고궁박물관 제1회의실)
- 안건 :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립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지 문항 검토
- 자문위원 : 김선철(국립국어원 선임연구원)
 - 김세훈(숙명여대 교수)
 - 이현식(인천 한국근대문학관 관장)
 -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 제2차 자문회의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15:00-17:00
- 장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의실
- 안건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 자문위원 : 라도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이현식(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관장)
 -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

제2장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문화진흥의 방향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성격

1. 계획의 개념과 기본계획의 특성

가. 정부계획의 개념 및 기능

- 행정계획은 행정의 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수단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 또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함.(김재호, 2007)
- 행정계획의 기능은 목표 설정 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으로 구성됨.
- 목표의 설정은 해당 목표를 지향하는 행정작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획에서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또한 목표는 행정활동의 내부지침으로서도 기능하지만 외부 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므로 중요
- 목표가 설정된 후에는 그 달성을 위해 행정수단의 조정 및 종합을 통해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
 - 특히 현대 행정은 조직과 수단의 세분화로 인하여 부처별 조정과 종합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을 통하여 통일적인 지침을 중심으로 행정작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즉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관련된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발생 가능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
- 계획은 국민에게 행정의 목표와 실현 수단을 미리 알림으로써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 국민의 동의와 협력을 확보한 계획은 행정 지체, 행정 불신, 저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행정 활동의 기준이 정형화표준화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행정계획은 내용 및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갖고 마련되는 것이 보편적임.

- 계획이 포괄하는 범위는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개별적인 부분계획으로 작성될 수도 있으며, 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누어지기도 함.
- 시행계획의 경우 집행계획, 세부계획, 상세계획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나. 기본법과 기본계획 수립의 관계

○ 기본법은 특정 분야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해당 정책의 체계화를 지향하려는 의지를 담은 법임.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정책 이념과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으로 제시된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명시하게 됨.

○ 이 때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고 해당 분야 제 활동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의 방식을 규정하게 됨.

○ 이러한 점에서 기본법은 ‘계획법’의 범주에서 이해가능하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법의 성격이 정책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자체가 계획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 정부가 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법제화는 계획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그 구조와 내용 그리고 절차를 정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열거되는 계획 사항의 추상성 및 일반성 때문에 정부의 재량이 크고 시책의 내용 등에 관해서도 법이 아닌 정부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행정과 국민의 대개적 기능이 축소된다는 의견도 존재
-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계획은 대부분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 형식을 갖추어 발표되지만 일반인과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고 이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성격의 것이 다수
- 또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계획은 개별 분야 혹은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문별 계획 혹은 전문계획에 해당함.
 - 전문계획은 계획과정에서도 다층성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장기 전망 성격의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부문별 시행계획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기본계획과 연차별·부문별 시행계획은 정부 부처 내부의 일반적인 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기본법상의 행정계획은 행정부 내부의 정책 지침적 성격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준용한다는 점에서는 행정 공무원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분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특성 구분

- 기본계획은 목표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계획은 수단의 설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
- 계획의 요소로는 계획 내용의 기본성(이해의 종합 정도), 계획 대상의 광범위성, 계획기간의 장기성이나 단기성, 계획 지역의 규모 등을 들 수 있

는데 기본계획은 그 중에서 기본성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간주됨.

- 계획의 위계는 기본법에 따라 작성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동일한 계획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양 계획 간의 상하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됨.
 - 시행계획은 연차별로 수립됨으로써 계획 간의 계층적 정합성이 확보되는 절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계획 권한에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문제로 대변되는데, 계획의 최종결정권, 계획의 원안책정권(국가계획이라도 지자체가 그 원안을 작성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는가의 여부), 다른 주체의 계획책정 과정에의 관여권 등을 종합판단하여 권한의 배분이 결정됨.
 - 일반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따름.
- 기본계획의 내용은 원칙적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책정권자의 재량범위에 있는데 기본법상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 및 항목을 포함해야 함.
 -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 분석을 통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정책의 방향, 추진 전략 또는 추진 과제의 제시, 추진 관련 기관의 제시 등이 포함됨.
- 계획의 책정 절차는 직접적 이해조정 절차(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공청회), 간접 이해조정(행정기관 상호 협조 및 위원회 부의), 객관성과 과학성 확보 절차(심의회 및 조사), 정보제공 절차(설명회, 공시, 통지 등)로 분류됨.
 - 그런데 계획의 계층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요청되는 것은 계획주체 상하간의 의견교환 절차임.
- 시행계획의 경우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추진 성과의 점검을 위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이 포함된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일

반적이며, 해당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의 승인 시 반영하도록 규정되는 경우도 있음.

2.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관계

- 「문화기본법」은 기존의 분야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기본법 및 진흥법이 표명하는 문화진흥의 세부 목표를 포괄하는 가운데 문화정책의 거시적 틀로서 작용하는 법이므로 정부의 문화 정책적 지향과 거시 목표를 기본계획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제정 「문화기본법」의 경우 분야별 기본법이나 진흥법에 포함되는 바와 같은 정부의 역할, 추진 체계, 시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문화정책의 분야별 구분을 제시하면서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형식이므로 기본계획의 수립은 중요성을 부여받게 됨.
- 문화정책의 분야별 제시와 더불어 이미 개별 법률을 통하여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세부 정책분야별 기본계획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본계획들 상호간의 조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 및 작성의 준거가 중요해짐.
- 또한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주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문화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정책이 국정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앞서 제시한 문화 분야 내의 세부 분야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외연을 가지는 계획의 관점도 필요

- 또한 「문화기본법」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문화진흥의 영역 제시 위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구현체로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절차에 대한 부문은 명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시행령 등의 수립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외적으로 또한 내적으로 연계성이 있고 실효성이 높은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 그 수립심사와평가의 과정과 내용에 정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도출을 통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임.

3.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법에 준하는 제도적 효력을 갖는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 분야 국가 계획으로서 최상위계획의 기능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 범위를 넘어선 범부처 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짐.
- 셋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중기 계획으로서 문화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며, 중기 문화정책의 제시를 통해 문화정책 관련 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성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함.
- 넷째, 내용적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지침으로서 기능을 함.

제2절

‘문화진흥’의 개념과 정책 방향

1. ‘문화진흥’의 개념

가. 정부정책에서 문화진흥 개념에 대한 논의

- ‘문화진흥’은 문화정책의 주요한 목표이자 정책 내용의 핵심을 구성하는 용어임. 그러나 ‘문화’의 개념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포함되는 내용에 차이가 생기고 정책대응의 내용과 방법에도 차이가 발생함.
-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논의들이 모두 ‘문화예술’의 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진흥의 기본 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4)」,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연구(2006)」, 「문화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2007)」 등
- 문화 관련 법제들이 각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에서 개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분야별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의 ‘문화’ 개념 정의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었음.
- 제정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는 ‘문화’에 대해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범주 정의는 기존의 문화영역에서 진흥의 대상으로 삼았던 문화예술영역의 국어(「국어기본법」)·공연(「공연법」)·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지원법」)·도서관(「도서관법」)·박물관 및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진흥법」), 문

화산업영역의 저작권(「저작권법」)·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출판(「출판 및 인쇄 진흥법」)·방송(「방송통신에 관한 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영역의 문화재(문화재보호법) 등을 넘어서 문화자원, 여가문화, 문화경관, 남북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등을 폭넓게 진흥의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

나. 정부 계획에 반영된 문화진흥의 내용

- 문화정책이 다루는 범주의 확대 및 전문화는 정부의 관련 계획이 다루는 대상, 주제, 영역의 확대를 가져옴.
- 정부 계획으로서의 문화 분야 각종 계획은 특정한 시기의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강조점 등이 중시되는 방식으로 수립됨.
- 문화 분야에 전문화된 정부계획의 수립은 문화부의 독립부처화가 이루어진 199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이는 문화 관련 장기계획인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수립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 계획은 ‘제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병합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함.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복지 문화, 조화의 문화, 개방문화, 민족문화, 통일문화 추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참여, 진흥, 권고에 입각한 문화적 창조역량을 극대화 하자는 발상과 문화의 매개적 기능을 강조하는 특징을 띠었음.
- 1993년 문민정부의 수립과 함께 기존의 10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이 제시되었는데 ‘곁에 있고 함께 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를 주제로 하는 자율, 지역, 향수, 통일, 세계화의 관점을 기본으로 삼았음.

- 이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기본적 흐름을 따르면서 민족정기의 확립과 문화산업 개발 및 기업문화의 활성화 지원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였음.
- 이후 문화 분야에서 정부 계획은 각 정부에서 수립하는 담당부처 차원의 정책 목표 제시와 이에 따른 주요 과제의 제안 형식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각 하위 분야별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침으로 삼는 방식이 일반화됨.
- 그러므로 문화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정책 방향과 그 실행 전략이 구체화되기보다는 분야별 업무지침으로서의 계획 기능이 우세하게 된 측면이 존재

2.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가. 법조문에 함축된 정책 방향

-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헌장으로서의 특성과 총괄규범으로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데 법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 및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의 정의(법 제3조)와 함께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법 제9조)
 - 둘째,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법 제2조)의 제시와 함께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 원칙’(법 제7조)을 천명하고 있음.
 - 셋째,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국민의 ‘문화권’을 명시하고 있음.(법 제5조)
 - 넷째,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5조)와 함께 정부에서 5년 단위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

- 다섯째,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법 제5조제4항)과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1조)
- 「문화기본법」은 다른 기본법과는 달리 이미 존재하는 광범위한 문화 분야 개별 법률들이 다루고 있는 정책 영역과 주제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책의 내용이 해당 부처의 업무분야를 망라적으로 포함시키는 형태를 띠.
 - 추진 체계에 있어서도 이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추진 체계를 제시하는 데는 논리적·실질적 한계를 노정하게 됨.
- 결국 「문화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이미 제시된 시책의 영역 및 내용에 더하여 「문화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영역 및 내용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게 됨.
- 「문화기본법」은 제2조 ‘기본 이념’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하는 데 기본 정신이 있으므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다른 분야에서의 관련 활동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에는 현재 규정된 시책의 영역 및 내용과 교차될 수 있는 기능적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특정 시점에서 문화정책의 진행 단계 또는 환경적 요인 등을 반영하는 가운데 수립된다는 점에서 일견 한시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요구하는 국가 문화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등은 이미 「문화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계획의 수립 시 논의되는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반영하게 됨.

-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이 작성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정의되는 문화정책의 정책 목표의 반영이 필연적이나 정부 차원의 시의적 목표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장기 추진 목표의 우선순위 및 강조점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나. 시의적 차원에서의 정책방향

-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인 2014년은 문화를 국정 핵심 기조로 삼게 된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변환하여 반영할 것으로 보임.
- ‘문화융성’은 첫째로는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는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경제·사회·기술공동체·역사·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2013.2.28)
- 이는 ‘새 정부 문화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수용되었는바, 정부가 새 정부의 정초 작업에서 문화의 창조 역량의 증진(및 그러한 환경의 조성)과 보장이라는 본원적 목표와 더불어 미래의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동시에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방향성이 중시되는 가운데 정책의 세부 분야 및 인접 분야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문화융성의 가치가 국정 전반에서 공통분모로서 고려해야 문화진흥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단순히 문화부의 활동을 종합하여 규율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기보다는 앞선 정책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논의의 구조 및 성과달성 평가의 체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제3장 ●●

국내외 기본계획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국내 타정책분야 기본계획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타정책 분야 기본계획 사례 현황

- 국내의 법정 기본계획은 2013년 11월 현재 251개에 이룸.
 - 이 가운데는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같이 근거 법률이 ‘기본법’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6건에 이룸.
 - 이 가운데 시행계획이 있는 기본계획은 97건이며, 지역계획이 있는 경우도 78건에 이룸.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은 있지만 지역계획은 없는 경우
- 251개 기본계획의 시행주기를 보면 5년 주기의 계획이 132개(전체의 52.6%)로 가장 많았음.
 - 기본계획은 대체로 중기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타’에는 20년 주기가 2개, 단년 주기 3개가 포함되어 있음.
 - 법령에 주기가 명시되지 않은 기본계획도 69개나 되었음.

〈표 3-1〉 기본계획 시행 주기별 현황

주기	없음	3년	5년	10년	기타	계
기본법	5	3	26	2	0	36
기본법 외 법률	64	10	106	28	7	215
계	69	13	132	30	7	251

-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4개의 사례를 살펴봄.
 -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정책 분야(관광분야) 1건, 다른 부처의 다른 정책 분야(사회보장, 여성, 외국인 분야) 3건

2. 사례1-사회보장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그동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1999~2013)’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임.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복지제도의 틀을 확충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제도간 연계 부족, 소득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등으로 지속가능성,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
 -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발전방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구속력 약화를 극복하고자 함.
- 내용이나 시행계획 부분에서 장기발전방향보다 기본계획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성격으로 설정됨.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주관함.

〈표 3-2〉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교

구분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 기본계획
성격	정기발전방향(구속력 약함)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 약화
타 계획과의 관계	없음	기본계획이 개별계획보다 우선 명시
시행계획	추진 방안(연도별 목표 없음)	연도별 목표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역계획	없음	기본계획과 지역계획간 연계 강화
주관부처 (협조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법적 근거	사회보장 기본법 제16조	사회보장 기본법 제16조

*자료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1018) 추진 계획」 재구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5년 주기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그리고 ‘지역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3항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의거, 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표 3-3〉 사회보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사회보장 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기본법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주요 내용²⁾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09~2013년

□ 비전

-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는 복지
-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복지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 위기대응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 목표

○ 예방형 복지

- 미래의 저출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 보육, 교육 등에 사전적으로 투자하는 예방적 복지 필요
- 일시적 실업, 질병 등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 필요

○ 보편형 복지

-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체계의 구축 필요
- 노령·실업·질병 등 舊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기술 및 능력 부족, 낮은 소득의 일자리, 다문화·한부모가족등과 같은 新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2)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 발표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맞춤형 복지

- 공급자의 편익, 복지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획일적 복지정책이 주로 시행되었으나,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필요함.
-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효율적·중복적·낭비적 요인을 제거

□ 중점 추진 과제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중점 추진 현황은 보육·가족 등의 분야, 55개의 추진과제와 162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표 3-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추진 과제

구분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보육·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확대
		보육시설 미아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보육료지원체계 효율화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제고	취약가정 보육 지원 강화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확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확산 내실화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	보육관리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직장 환경조성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기능 강화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성장 지원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아동발달지원 계좌 확대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위기청소년사회 안전망 확대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구분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저소득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안전한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 확대아동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실종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강화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장기요양인프라 확충과 적정 분포 유도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	치매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 종합적·체계적 관리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여가활동지원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	취약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강화 및 인식개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도입 장애아동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검토
장애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도입 장애아동 재활 치료 사업 확대
	장애인 권익증진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제도 개선 추진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 선진화	장애인판정·등록 체계 및 전달 체계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복지전달체계	지역의 복지수행 역량 강화
행정 인프라의 합리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및 운영 복지계좌 도입 및 다부처 복지 전산망 연계 유사·중복 복지 사업 조정 강화 적정급여 관리 체계의 활용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		전자바우처 표준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적용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		사회서비스 자격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체계화
		정보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구분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 기반 마련	(가칭)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민간자원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모금 활성화	모금기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 모금시장 경쟁체계 마련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 자원봉사영역 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시스템 개선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일자리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및 재정효율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육성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자립여건 조성 자립능력 강화 자립토대 구축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보호 고용 확대 및 유형 개편 장애인 생상품 판매 활성화
소득보장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제도운영의 합리화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합리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소득보장 제도 간 연계성 제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연계성 제고방안 마련
의료보장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체납자 축소 의료안전망 확충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의료보장 내실화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 건강검진 내실화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구분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교육 복지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지원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	영어 교육격차 완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	유아학비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근로자 복지	공공근로복지 증진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대부 지원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 고도화
		체불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체계 구축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 지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 청년층 고용 촉진	
	여성·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확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주거 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임차인 자금 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마련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임대로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	

구분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에너지 복지	에너지비용부담 완화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보장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문화 체육 복지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 조성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이주민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활성화
	복지 관광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관광 지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 성화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확대	
여성 복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 해자 보호 강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농어촌 복지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 개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농지연금 도입
		농어업인 재해보상 강화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증진 지원
	농어촌 보육교육여건 개선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확대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농어촌유학활성화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추진
영농가사도우미 지원확대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		
이민여성 농촌정착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수협 소유 복지자원 활용

*자료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보건복지가족부

라. 계획 수립 절차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민관합동기획단 구성 및 운영
 - 토론회,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 : 2013.5~6
 - 민관합동기획단 및 분야별 T/F 구성·운영 : 2013.5~11
 - 목표, 중점분야, 소요 재원규모 등 확정 : 2013.9
- 기본계획 세부과제(안) 마련
 -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통보 : 2013.5
 - 관계부처 기본계획(안) 수립 및 제출 : 2013.6
 - 공개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2013.10
 -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사회보장위원회) : 2013.11~12



*자료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 수립 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그림 3-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3. 사례2-여성정책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정책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음.
-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1989년부터 수립·시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계획임.
- 「여성발전 기본법」 제7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

〈표 3-5〉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시행 기간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주관부처 (협조부처)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제9조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5년 단위의 ‘여성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시행을 조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 협조’에서는 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9조 제3항에서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6〉 여성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 증진
 -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등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 제5조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작성한 시행계획안을 ‘조정회의’를 거쳐 ‘심의·확정’한 후 매년 4월 말까

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의2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대해, 제6조에서는 관계 각 기관의 협조부서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7〉 여성정책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소관 여성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 관련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3~2017년

□ 비전

-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 목표

-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 일과 가족의 조화

□ 정책 방향

-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 사회 각 영역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의 실질적 해소 등 남녀 간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지향을 강화
 - 여성의 일·가족·인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적 정책실행의 관점 반영
-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통
 - 여성·사회단체 등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정책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 여성의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제의 개발·확산
- 남녀를 아우르며,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적 평등문화 지향
 - 여성고령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20·30여성 세대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에 대응

-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 여성 내부의 다양성 증대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 정책관리 수단의 확보 및 성평등 책무성 강화

-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을 내실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정책도구와 연계 강화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의 책무성 제고
-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 설정,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의 성과 관리 강화

□ 중점 추진 과제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7개의 추진과제, 21개 세부추진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기본계획의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짐.

〈표 3-8〉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교육부/노동고용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통일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돌봄 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교육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여성가족부/경찰청/법무부/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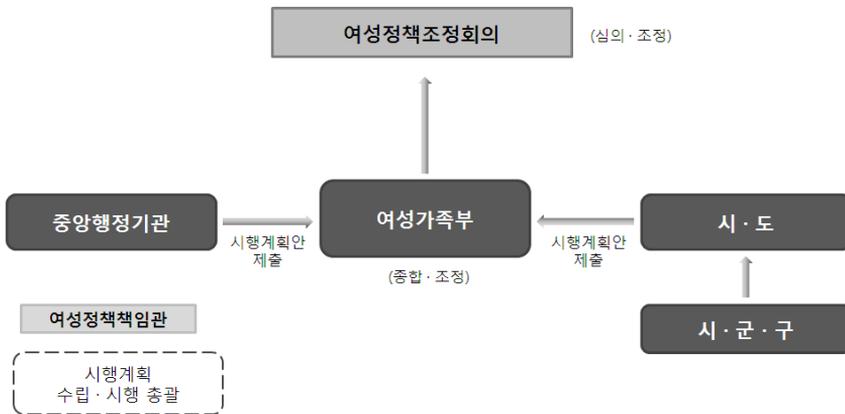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외교부/국세청/국무총리실
여성·가족과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통일부/법무부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여성가족부/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통일부/국방부/외교부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여성가족부/외교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초·중등 및 고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통계청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교육부/통계청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안전행정부

*자료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4)」, 여성가족부

라. 계획 수립 절차

- 여성가족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협의’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소관업무 담당부서별로 수립된 시행계획안은 각 기관 내 ‘여성정책 협조 부서’에서 종합·조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될 ‘여성정책책임관’이 기간 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안을 종합·조정한 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상정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확정



[그림 3-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4. 사례3-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외국인정책’이란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 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을 의미(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이라는 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음.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임.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2007.7.18)
 -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 및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08~2012)
 -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8.12.17)
 - 외국인정책의 4대 정책목표 및 169개 세부과제 선정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2012.11.18)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2013~2017)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

- 법적 근거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등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된 법정 국가계획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7조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와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보장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평가와 관련, ‘심의회’ 기능을 담당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표 3-9〉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등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지만, 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도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시행령 제8조 제1항)

〈표 3-10〉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 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7조~제13조 외국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내용 생략

제14조 (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3~2017년

□ 비전

○ 비전 :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사회갈등 요인이 아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면서 미래의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임.

□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

○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17개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

○ 주요 추진 과제

-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 및 자동출입국 심사기반 확대, 우수 인재 온라인 비자 발급 등 29개 과제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가칭) 마련 추진,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등 40개 과제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등 29개 과제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기초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등 불법체류자 단속 체제 다변화 등 26개 과제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 등 22개 과제

비
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정
책
목
표
및
중
점
과
제

정책목표	중점 과제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그림 3-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라. 계획 수립 절차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계획기간 전년도에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
-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

의와 확정을 통해 계획 수립이 이루어짐.

〈표 3-11〉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25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17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중소기업청장·해양경찰청장
민간위원(7명)	(7명)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 기본계획의 초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 참고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2011.12)
 -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민정책자문위원회’(2012.4.13),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012.4.30)
 -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토론’ 개최(2012.4.24.~6.18)
 - ‘기본계획 작성지침’ 통보(2012.5.2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 관련 부처 검토회의(2012.9.18.~20)
 - ※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복지의 연계, 기초질서 위반 외국인 제재, 문화 다양성 증진 등
 - 기본계획(안) 부처별 의견 수렴(1차)(2012.9.28.~10.12)
 -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2012.10.12)
 - 기본계획(안) 부처별 의견 수렴(2차)(2012.11.2.~11.8)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2.11.9)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2012.11.20)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2012.11.28)

5. 사례4-관광개발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전국 관광개발의 발전을 위해 관광자원을 보호,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함.
-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992년부터 수립·시행되었으며,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장기 법정계획임.
- 전국을 대상으로 본 기본계획을 시행하여, 국가적인 관광개발은 물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이며,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서 국제 관광시장 및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관광 요소에 대한 영역을 넓혀나감.

〈표 3-12〉 관광개발 기본계획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공간적 범위	전국	전국	전 국토(한반도 전체)
시행 기간	1992~2001(10년)	2002~2011(10년)	2012~2021(10년)
주관부처 (협조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 1항 규정	관광진흥법 제49조 1항 규정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적 근거1 : 「관광진흥법」 제49조 등
-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제1항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9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약칭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0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제51조에서는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표 3-13〉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관광진흥법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 (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 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광진흥법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1조 (권역계획)

① 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3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1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3-14〉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 가.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2~2021년

□ 비전

- 향후 10년은 세계화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회 기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함.
-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개발은 글로벌 녹색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여 개방적 사고와 통합된 힘으로 고품격 선진 미래관광을 추구해야 할 것임.
- 관광개발의 철학 및 계획 기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계획 비전을 ‘글로벌 녹색 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함.

□ 계획 목표

- 한국 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관광개발의 소재, 공간 및 주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대국으로서 다양한 한국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창

조적 파괴와 콘텐츠 혁명을 유도하는 개발

- 한국 문화의 정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로 전환하고, 국제화 시대에 개방의 패러다임으로 창조적 문화관광 개발을 지향

○ 관광자원의 보존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미래의 관광개발은 물리적 개발에 치중하는 방향성에서 탈피하여 관광 자원, 관광객이 교감하는 교차점을 찾아내고 자연과 문화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보전 중심의 관광개발
- 녹색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관광분야에서 탄소를 저감하고 저탄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관광개발 방향 설정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선진관광을 실현하는 미래의 관광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개발
- 미래의 관광개발은 토지를 이용한 토목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융복합과 협력에 기반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관광 및 여가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개발

○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 선진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은 정의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개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협력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
- 관광부문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개선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NPO 등 다양한 관광개발 주체가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관광개발 지향

○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 선진관광을 실현하는 미래의 관광개발은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개발
- 토지개발에서 공간개발로 전환하고 산업 관점에서 관광개발을 추구하며 양적 확대가 아닌 효율과 품격을 증진시키는 관광개발 지향

□ 전략별 추진 계획

-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추진 계획은 ‘6대 개발전략’을 설정하여 관광을 정책, 환경 및 문화 등의 영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능동적인 관광개발을 실현하려 함.
- 각 항목별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 전략을 통해 본 기본계획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주관부처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국토교통부(계획 수립 당시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부 추진전략을 시행함.

〈표 3-15〉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추진계획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재생정책 추진	공공형 관광개발 정책 방향 설정	문화체육관광부
		체계적 관광개발 지원 강화	
		가칭 관광자원개발법 제정	
	관광개발 민간참여 확대	공공부문 민자유치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의 관광개발 참여 기회 확대	
		지속적 운영을 고려한 추진체계 개선	
	관광개발 R&D 기능 강화	관광개발 R&D 지원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R&D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관광개발 R&D의 영역 확장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新 관광개발 영역 발굴	미래형 고품격 해양 문화관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우주관광 시대를 대비한 기반 조성	교육과학기술부
	복·융합 관광 개발 확대	MICE산업과 연계한 관광개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특화 개발	
		크루즈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국토해양부
		쇼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한식세계화를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산업관광 활성화	산업관광 핵심인프라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관광 거점 개발	
		산업유산 관광자원화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문화가 흐르는 도시관광 구축	도시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확대	
		특색있는 창조도시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新 관광공간 창출	지역경관에 기반을 둔 관광 특성지역 창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마을 정비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재생	
한국문화의 브랜드화	한류의 세계화 촉진	국가 문화유산의 세계화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성화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	숙박시설의 다양화 및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접근성 향상 및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관광 안내·정보 시스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국민생활관광 기반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고품격 실버관광 추진 확대	
		청소년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확산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취약계층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여건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관광개발의 환경적 지속성 제고
관광부문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관광객 및 관광사업자 환경인식 개선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과 확산		생태관광거점의 명소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친환경 선형관광루트의 구축	
		녹색관광기술의 도입과 확대	지식경제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남북한 연계 관광개발 기반 확충	관광부문 남북한 연계 협력 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북한관광 활성화기반 구축	
		한반도 공동 관광개발 추진	
	동아시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동아시아 관광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 역내 관광교류 촉진	국토해양부
		동아시아 관광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2021)」, 문화체육관광부

6. 타정책분야 기본계획 사례 시사점

- 현행 국가 법정 기본계획 가운데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유형의 기본계획이 36건이며, 기타 법률에 의거한 기본계획이 215건임.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제1차 계획이 시행되지만, 1999년부터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라는 예비 계획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법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 기본법」 제20조)가 구성되어 있는 조건에서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계 모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음. 「여성발전 기본법」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실행력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발전 기본법」 제11조)가 설치되어 계획에 대한 심의 조정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계획에 대한 심의·확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다른 정책 분야 ‘기본계획’의 큰 차이는 「문화기본법」에 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 협조 조항, 계획의 심의·조정·확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협력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실행력의 담보가 어렵다는 점임.

제2절

문화정책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문화 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 현황

- 문화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정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임.
 - 문화 분야에는 기본계획 10건, 종합계획 3건, 기타 계획 3건 등 모두 16건의 법정계획이 있음.

〈표 3-16〉 문화 분야 법정계획 종별 현황

구분	계획명
기본계획 (10)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국어발전 기본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기본계획 ·문화재 기본계획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계획 ·영화진흥 기본계획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종합계획 (3)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
기타 계획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 이를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유산분야 4건, 문화예술분야 5건, 문화산업분야 7건으로 문화산업 분야의 법정계획이 가장 많음.

- 문화유산분야에는 ‘문화재 기본계획’, 문화산업분야에는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해당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문화예술분야’에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표 3-17〉 문화 분야 법정계획 분야별 현황

구분	계획명
문화유산분야 (4)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기본계획 ·문화재 기본계획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계획
문화예술분야 (5)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국어발전 기본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문화산업분야(7)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영화진흥 기본계획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 한편 외국에서 「문화기본법」 및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유사한 사례는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있음.
- 이에 여기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국내 문화 분야의 주요 기본계획의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2. 국내사례1-문화재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문화재 기본계획’은 문화재에 대한 국가 및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주요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음.
- ‘문화재 기본계획’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한 5년마다의 법정계획으로서 2007년부터 수립·시행되었음.
- ‘문화재 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표 3-18〉 문화재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시행 기간	2007~2011년	2012~2016년
주관부처 (협조부처)	문화재청	문화재청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5년 단위의 ‘문화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등

- 「문화재 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문화재 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4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 보호법」 제7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19〉 문화재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 보존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를 문화재 보호 관련 전문가 및 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20〉 문화재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2차 문화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2~2016년

□ 비전

- 소통과 융합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체계 선진화

□ 목표

-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 합리적 규제와 사유 재산권의 보호기반 확대
-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중점 추진 과제

- ‘제2차 문화재 기본계획’은 8개 추진과제, 23개 세부추진 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표 3-21〉 제2차 문화재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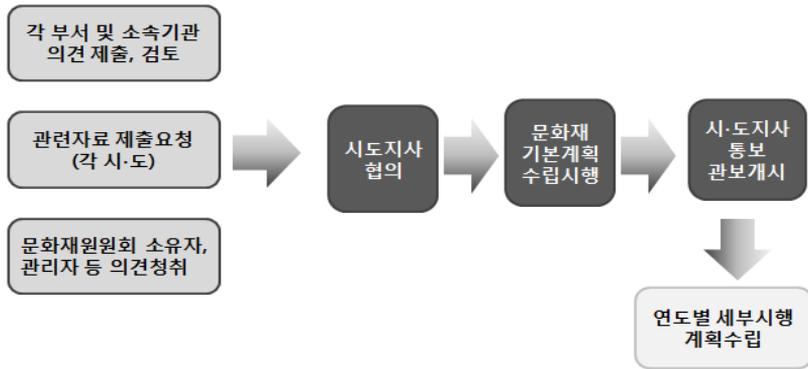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호	사적 역사문화환경 합리화	문화재청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지원	
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역량 강화	IT 활용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문화재청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체계 강화, 방재 기반 마련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문화재 보존정비 체계화	문화재보수 품질향상, 건조물·동산·자연유산 보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승보존기반 강화,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조선왕궁 원형복원 및 승례문 복구	
문화재 첨단 기록정보화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강화, 문화재 전자행정 성숙기반 마련	문화재청
	통합되고 품격 높은 문화유산 정보제공	
	첨단정보기술을 통한 문화재 기록 보존 활용	
문화재 가치활용 및	문화재 활용 콘텐츠 다각화	문화재청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산업화	문화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보호재단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문화재 연구 교육역량 강화	문화재·해양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문화재청
	왕실문화유산·전통문화 교육역량 강화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 국제교류 활성화	문화재 협력 국제교류 강화	문화재청
	국외 문화재 환수 활용 기반 조성	
	남북 문화재 협력 안정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 확대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구축	

*자료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계획(2012~2016)」, 문화재청

라. 계획 수립 절차

- ‘문화재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투명성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문화재 보호법」 제6조, 제7조 및 하위법령을 통해 수립과정 시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 및 관보에 게시하며, 문화재청과 시·도는 문화재보호법 제7조 등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자료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계획(2012~2016)」, 문화재청
 [그림 3-4]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3. 국내사례2-국어발전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국민의 국어인식 및 국어 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국어 환경 부합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발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수립 목적임.
-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수립·시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임.

〈표 3-22〉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시행 기간	2007~2011년	2012~2016년
주관부처 (협조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6조 등	국어기본법 제6조 등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 등

- 「국어기본법」 제6조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안에 대해서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어기본법」 제7조에서는 ‘국어발전 기본계획’ 실천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23〉 ‘국어발전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2~2016년
- 비전
 -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정책
- 목표
 - 고품격의 언어문화 창조 기반 확보
 - 공생공영 사회 실현에 기여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
 - 우리말 보존과 전승 여건 조성
- 중점 추진 과제
 -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5개 추진과제, 15개 세부추진전략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함
 -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며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수립·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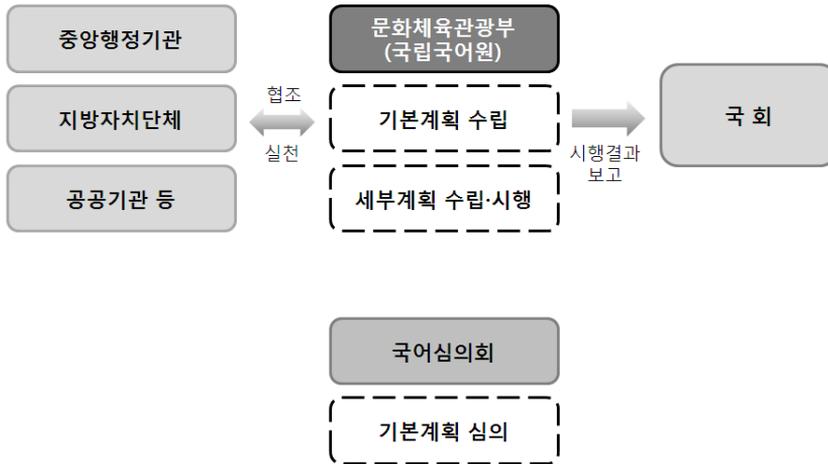
〈표 3-24〉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사용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	언어적 소외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이 의 증진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언어 사용 문화 개선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 상 강화	「세종학당」확대·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자료 :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2016)」,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라. 계획 수립 절차

-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등의 계획을 수집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됨.



*자료 :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그림 3-5]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4. 국내사례3-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를 통해 국민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립·시행됨.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를 통해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 향상, 국민 소통의 기반 및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 향상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 등에서 출발함.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서 2009년부터 수립·시행되고 있음.

〈표 3-25〉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시행 기간	2009~2013년	2014~2018년
주관부처 (협조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적 근거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등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등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 : 「독서문화 진흥법」 제5조 등

- 「독서문화 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서문화 진흥법」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26〉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독서문화진흥법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등
-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27〉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독서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4~2018년

비전

-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정책 방향

- 기회를 이용한 강점 극대화 방향

-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사업과 연동한 독서의 외연 확대
- 전자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독서의 외연 확대

- 기회를 이용한 약점 극복 방향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정책을 통한 독서율의 제고 및 계층별 독서격차 해소
- 문화융성, 인문정신 강조에 따라 독서전담조직 신설 등 체계적인 독서 문화 정책 추진

- 강점을 이용한 위협 극복 방향
 - 제1차 계획의 성과(독서환경, 다양한 독서운동, 취약계층 독서 지원)의 지속화
 -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확대를 통해 독서환경 조성 및 출판 산업 진흥
- 위협과 약점 극복 방향
 - 다매체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 콘텐츠 개발
 -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지원, 계층별 격차 해소
 - 다양한 독서운동의 전개로 독서 생활화 추진
- 중점 추진 과제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4대 추진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국방부 및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세부추진과제들을 수립·시행 함.

〈표 3-28〉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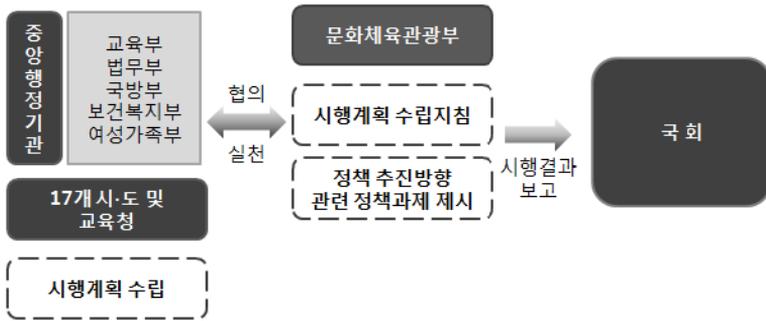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사회적 독서 진흥기반 조성	독서진흥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독서환경 개선	교육부
	책 읽는 직장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독서자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 기반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속 독서 문화 정착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프로그램 보급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독서정보 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국민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 법무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독서 참여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지역 풀뿌리 독서 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를 통한 인문 정신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	독서 장애인 독서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병영,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법무부
	다문화가정의 독서 접근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자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문화체육관광부

라. 계획 수립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 독서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과제를 일괄 제시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
- 각 부처 및 시·도 소관 분야에 대해 시행계획 제출 요청(매년 1월 말일까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
- 연차 보고 국회 제출
 -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 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



[그림 3-6]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5. 국내사례4-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자율참여분권을 근간으로 공연예술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공연예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연예술진흥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2009년 제8차 계획까지 수립되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공연법」에 의거한 계획이며, 계획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연도별 단기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유관기관 협의, 공연예술계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시행하여 왔음.

〈표 3-2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제5차 계획	제6차 계획	제7차 계획	제8차 계획
시행 기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법적 근거	공연법 제3조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1 : 「공연법」 제3조

- 「공연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연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30〉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공연법

-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공연법 시행령」 제2조
- 「공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연법」 제3조제2항제7호에 근거 다음 내용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추가하고 있음.

〈표 3-31〉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공연법 시행령

- 제2조(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200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³⁾

-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3)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작성되어 발표되었으나 2008년에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2009년에 제8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수립 중단 상태임. 따라서 ‘200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이 가장 최근의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목표

-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고, 공연예술계의 창의역량을 제고하며, 공연예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함.

□ 기본 방향

- 공연예술의 창작·매개·향유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
- 공연예술 현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쟁

□ 전략별 추진 계획

- ‘2009 제8차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창작·수요 확대 등 4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개 추진과제와 42개 세부추진전략의 프로그램을 시행함.
-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표 3-32〉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추진계획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창작·수 요 확대	공연예술의 창작 역량 제고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의 브랜드 제고	문화체육관 광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전국연극제·전국무용제 지원	
		전통공연예술 원형복원 및 창작 지원	
		전국규모 주요 문화예술행사 지원	
		창작 팩토리	
	공연예술의 유통 체계화	찾아가는 공연활동 지속 지원	문화체육관 광부
		공연·전시 문화나눔사업 지원	
		예술 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생활 속의 국악 향유 여건 조성	
		장애인 공연예술 접근성 확대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세계화 및 산업화 기반 마련	
		청소년 문화공감 프로그램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	

추진계획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경영기법 도입	공연예술의 유통 체계화	서울아트마켓(PAMS)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확산	
		공연예술투자조합 설립	
		문화로 모시기 기반 구축	
		문화접대비 제도 공고화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의 체계적 지원	
자생력신장	공연예술 기관·단체의 경쟁력 강화	예술기관 특성에 맞는 브랜드 작품 개발 및 레퍼토리화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 지원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육성	
		공연예술 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무용수 재교육 지원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문화예술기관 인턴십 운영 지원	
		예술영재 육성	
기반조성	공연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학로 건립 지원	
		민간 소극장 공공임대·운영 사업	
	공연 관련 법·제도의 개선	국립예술단 공연연습동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통계 서비스 운영	
		공연예술 실태조사 시행	
공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지속 개선	
		공연예술 경연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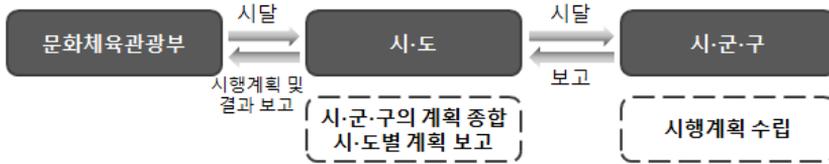
*자료 : 「200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라. 계획 수립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 추진 시책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과 함께 시·군·구에 시달함.

- 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도의 별도지침에 따라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을 종합한 시·도별 계획을 계획연도 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함.
- 시·도는 계획 익년도 1월말까지 시·군·구의 세부계획 시행결과를 포함한 시·도의 계획연도 공연예술진흥계획 시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함.



[그림 3-7]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6. 국내사례5-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가. 개념 및 목적

-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임.
- 2011년부터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주관함.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거 수립·시행되는 3년 단위의 법정계획임.

〈표 3-33〉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구분	제1차 계획
시행 기간	2011~2013년
주관부처 (협조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나. 계획의 구성 및 법적 근거

□ 계획의 구성

○ 3년 주기의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됨.

□ 법적 근거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등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서는 정부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6조에서는 콘텐츠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34〉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률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법적 근거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등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35〉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다.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 기간

○ 계획 기간 : 2011~2013년

비전

○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13년 세계 7대 강국에서 2015년 5대 강국 진입이 목표
 - 시장규모 : GDP대비 2009년 2.7%→5% 이상
 - 수출규모 : 시장규모 대비 2009년 4.2%→7% 이상
 - 고용규모 : 10만 명 신규고용 창출

□ 중점 추진 과제

-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5대 추진과제와 15개 세부추진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36〉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진흥위원회/기획재정부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범정부 융합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진흥위원회/지식경제부
국가창조력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G20 창의 인재양성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콘텐츠 산업에 기반을 둔 청년고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중기청)/방송통신위원회/외교부·국토교통부
	창작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병무청·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콘텐츠진흥위원회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외교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외교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추진과제	세부추진전략	주관부처
	사업자간 ·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제작 · 유통 ·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서울시 · 경 기도 · 지자체
	선진 유통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진흥위원회

*자료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라. 계획 수립 절차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 확정→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발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안전행정부 소관 시행계획에 지자체 의견 반영)이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

7. 외국사례-일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일본에서 문화정책 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이 있음.
- 일본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은 2001년 11월 30일 제153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어 12월 7일에 공포·시행되었음.
 - 일본에서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과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문화정책 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하였음.
 - 일본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문부과학성으로 문화행정만이 아니라 교육과 과학 분야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은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정부 공식 문서임.

〈표 3-37〉 일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 관련 법률 조항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2장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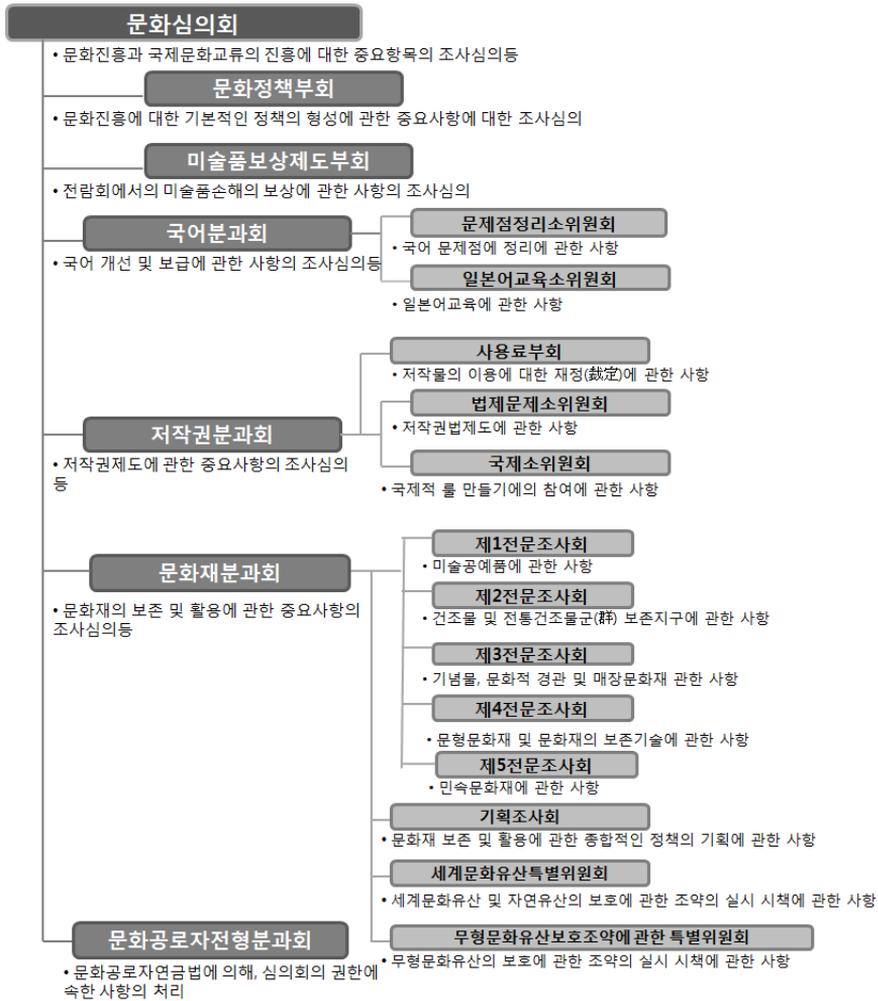
- 제7조 ①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함)을 정해야 한다.
- ② 기본방침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 ③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文化審議會)의 의견을 청취,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④ 문부과학대신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 ⑤ 제3, 4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 시에도 준용한다.

*자료 :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http://www.bunka.go.jp>)

-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문부과학대신(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해당)이 「문화심의회(文化審議會)」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함.
- 일본 「문화심의회」는 일본 정부의 중앙부처 개혁에 따라 국어심의회, 저작권심의회, 문화재보호심의회, 문화공로자선정심의회(文化功勞者善正審議會)의 기능을 통합 정리하여 2001년 1월 6일자로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기구로 관련법에 의

해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정책 자문기구임.

- ‘문화심의회’의 주요 업무는 문부과학대신 또는 문화청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국어의 개선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문부과학대신 또는 문화청 장관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임.
- ‘문화심의회’의 구성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함.
- ‘문화심의회’에는 국어분과회, 저작권분과회, 문화재분과회, 문화공로자 선정분과회 등의 네 개 분과회와 문화정책부회와 미술품보상제도부회 등 두 개의 부회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재분과회에는 5개의 전문조사회와 1개의 기획조사회가 있음.([그림 3-8] 참조)
- ‘문화심의회’에서는 2002년, 2007년, 2011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구축에 관하여(文化を大切にする社会の構築について)」(2002년 4월 24일)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관하여(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2002년 12월 10일)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재검토에 관하여(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の見直しについて)」(2007년 2월 2일)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3차)에 관하여[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第3次)について)」(2011년 1월 31일)



*자료 :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http://www.bunka.go.jp>)

[그림 3-8] 일본 문화심의회 구성도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은 ‘문화심의회’에서 의견서[답신(答申)]를 받은 후 내각회의[각의(閣議)]의 결정을 통해 공식 확정되며, 지금까지 2002년부터 3차 ‘기본방침’이 발표됨.
 - 제1차 기본방침(2002년 12월 10일 내각회의 결정)
 - 제2차 기본방침(2007년 2월 9일 내각회의 결정)
 - 제3차 기본방침(2011년 2월 8일 내각회의 결정)

- 일본 문화심의회는 ‘제3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의 심의를 위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3회의 총회와 17회의 심의회,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함.
 - 2010.02.10. 제50회 총회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자문)
 - 2010.02.10. 제1회 심의회 : 부회장(部會長) 선임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 2010.03.08. 제2회 심의회 : ‘국가 정책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의 의의에 관하여’(심의)
 - 2010.03.11. 제3회 심의회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관점에 관하여’(심의)
 - 2010.03.23. 제4회 심의회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점 시책에 관하여’(심의), ‘워킹 그룹(WG)의 설치에 관하여’(결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점 시책’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조사 검토

- 무대예술WG : 4/13 4/20 4/26(3회)
- 미디어예술·영화WG : 4/9 4/21 4/28(3회)
- 미술WG : 4/14 4/23 5/7(3회)
- 생활문화WG : 4/9 4/13 4/28(3회)
- 문화재WG : 4/7 4/20 4/28(3회)

- 2010.05.12. 제5회 심의회 : ‘각 WG에서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보고)
- 2010.05.19. 제6회 심의회 : ‘「심의 경과 보고」 골자(안)에 관하여’(심의)
- 2010.05.24. 제7회 심의회 : ‘「심의 경과 보고」(초안)에 관하여’(심의)
- 2010.06.02. 제8회 심의회 : ‘「심의 경과 보고」(안)에 관하여’(심의)
- 2010.06.07. 제51회 총회 : ‘문화정책부회에서 심의 경과에 관하여’(보고)
- ※ 2010.06.08.~07.23. 국민 의견 수집
- 2010.09.08. 제9회 심의회 : ‘「심의 경과 보고」의 2011년도 개산요구(概算要求) 등에의 반영 상황에 관하여’(보고), ‘「심의 경과 보고」에 대한 의견 수집의 결과에 관하여’(보고), ‘제2차 기본 방침(중점 사항)의 실시 상황의 평가에 관하여’(심의)

- 2010.09.13. 간담회 : 문화예술 관계 단체로부터의 의견 청취①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전일본무대·텔레비전기술관련단체연락협의회
(사)일본만화가협회	(일사)일본애니메이터·연출협회
(사)일본오케스트라연맹	(공사)노협회
(특활)아트NPO링크	(특활)전국시가지보존연맹

- 2010.09.15. 제10회 심의회 : 문화예술 관계 단체로부터의 의견 청취②

(사)기업메세나협의회	(사)일본극단협의회
(사)일본연주연맹	(사)일본사진가협회
(사)전국국보중요문화재소유자연맹	(사)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
(특활)영상산업진흥기구(VIPO)	

- 2010.09.29. 제11회 심의회 : ‘답신·제3차 기본방침의 구성에 관하여’(심의), ‘중점 전략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정책 목적·달성 목표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 2010.10.20. 제12회 심의회 : ‘중점 전략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정책 목적·달성 목표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배려 사항 등에 관하여’(심의)
- 2010.11.08. 제13회 심의회 : ‘중점 전략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정책 목적·달성 목표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심의), ‘배려 사항 등에 관하여’(심의)
- 2010.11.22. 제14회 심의회 : ‘이제까지의 의견 정리①’, ‘중점 전략의 공정표에 관하여’(심의)
- 2010.12.01. 제15회 심의회 : ‘이제까지의 의견 정리②’
- 2010.12.20. 제16회 심의회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3차)에 관하여(답신 초안)’(심의)
- 2011.01.17. 제17회 심의회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3차)에 관하여(답신안)’(심의)
- 2011.01.31. 제52회 총회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3차)에 관하여’(답신)

○ 한편 문부과학대신은 ‘기본방침’의 내용이 확정되면, 즉시 공표해야 함.(「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제7조 제4항)

- ‘제3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이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점 시책,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38〉 일본 제3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의 내용 체계

구분	세부 내용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이념	1. 문화예술 진흥의 의의	
	2.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본 관점	(1) 문화예술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 (2) 기본 관점(성숙사회에서 성장의 원천, 문화예술 진흥의 파급력, 전 사회적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에 관 한 중점 시책	1. 6대 중점 전략- ‘문화 예술입국’의 실현을 향하여	중점전략1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중점전략2 :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인재의 충실 중점전략3 : 어린이·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진흥책의 충실 중점전략4 : 차세대에 문화예술의 확실한 계승 중점전략5 : 지역 진흥, 관광산업 진흥 등에 문화예술의 활용 중점전략6 : 문화발신·국제문화교류의 충실
	2. 중점 전략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횡단적이면서 종합적인 시책의 실시 (2) 계획, 실행, 검증, 개선(PDCA) 사이클의 확립 등
문화예술 진흥에 관 한 기본 시책	1. 문화예술 각 분야의 진흥	(1) 예술 진흥 (2) 미디어예술 진흥 (3) 전통예능의 계승 및 발전 (4) 예능 진흥 (5) 생활문화,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6) 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
	2. 지역에서 문화예술 진흥	
	3. 국제교류 등의 추진	
	4. 예술가 등의 양성 및 확보 등	
	5. 국어의 바른 이해	
	6. 일본어 교육의 보급 및 충실	
	7. 저작권 등의 보호 및 이용	
	8. 국민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1) 국민 감상 등의 기회 충실 (2)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4)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구분	세부 내용	
9. 문화예술 거점의 충실 등		(1) 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 (2)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충실 (3)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 장의 충실 (4) 공공건물 등의 건축에서 배려
10. 그 외 기반 정비 등		(1)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추진 (2) 지방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의 정보제공 등 (3) 민간의 지원(支援) 활동의 활성화 등 (4) 관계 기관 등의 제휴[連携] 등 (5) 표창[顕彰] (6) 정책 형성에 민의의 반영 등

*자료 :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http://www.bunka.go.jp>)

8. 문화정책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문화 분야 기본계획은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같이 기본법에 근거한 사례도 있고, ‘문화재 기본계획’이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같이 보호법이나 진흥법에 근거한 사례도 있음.
- 대부분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과 같이 3년 단위 계획도 있고,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처럼 연도별 계획도 있음.
- 문화 분야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시행중인 계획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수립되는 계획의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전략적 방향성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 체제를 마련해야 함.
- 일본의 경우 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정부와 지자체 문화정책의 지침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된 ‘계획’의 성격이 아닌 ‘지침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중기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도 그와 유사한 기능이

필요하므로 유사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 일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은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임.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명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3년 10월 21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 문화정책 전문가
- 조사표본 : 60명
- 조사방법 : 이메일로 설문 안내문을 보낸 후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www.dooit.co.kr)으로 링크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사용
- 조사항목 : 문화진흥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인식 등 총 11문항

〈표 3-39〉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문항

연구문제	내용	문항번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인식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문1, 문2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체계	문3, 문4, 문5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다른 기본계획과의 관계	문6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와 이행 점검 방식	문7, 문8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관계	문9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문10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점	문11
응답자 속성	문화계 활동 경력	Q1.
	문화계 활동 분야	Q2.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문화정책 전문가 60명에게 설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55건과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회송된 5건 등 회수된 응답 60건(회수율 100%) 중 유효한 응답 60건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함.
- 응답자 속성
 - 응답자 속성은 문화계 활동 경력과 분야로 구분함.
 - 문화계 활동 경력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는 33.4%(20명), 11년 이상에서 20년 이하는 43.5%(26명), 21년 이상에서 30년 이하는 16.7%(10명)로 나타남.
 - 그 외 31년 이상 1.7%(1명), 무응답자 5.0%(3명)로 나타남.
 - 문화계 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이 61.7%(37명), 문화유산이 3.3%(2명), 문화산업이 18.3%(11명)로 나타남.

〈표 3-40〉 설문조사 응답자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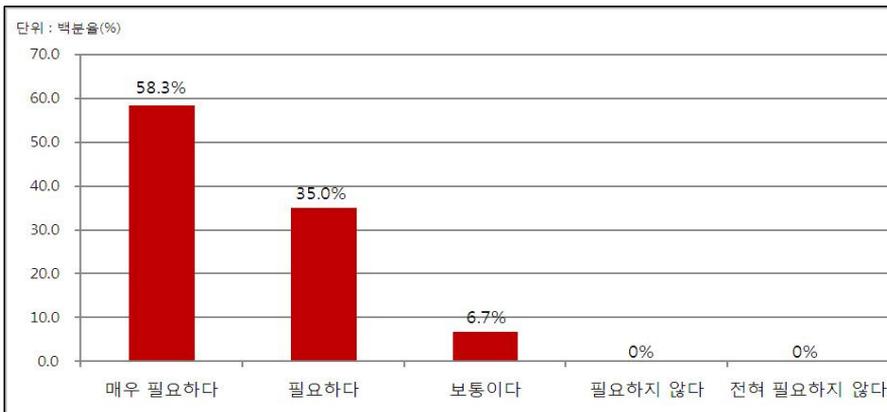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문화계 활동 경력	31년 이상	1	1.7
	21년 이상 ~ 30년 이하	10	16.7
	11년 이상 ~ 20년 이하	26	43.5
	1년 이상 ~ 10년 이하	20	33.4
	무응답자	3	5.0
문화계 활동 분야	문화예술	37	61.7
	문화유산	2	3.3
	문화산업	11	18.3
	기타	10	16.7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

-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8.3%(35명), ‘필요하다’는 응답이 35.0%(21명)로 전체의 93.3%(56명)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보통이다’는 응답이 6.7%(4명)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0.0%로 나타남.
 - 문화정책 전문가 대다수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3-41〉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35	58.3
필요하다	21	35.0
보통이다	4	6.7
필요하지 않다	0	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합계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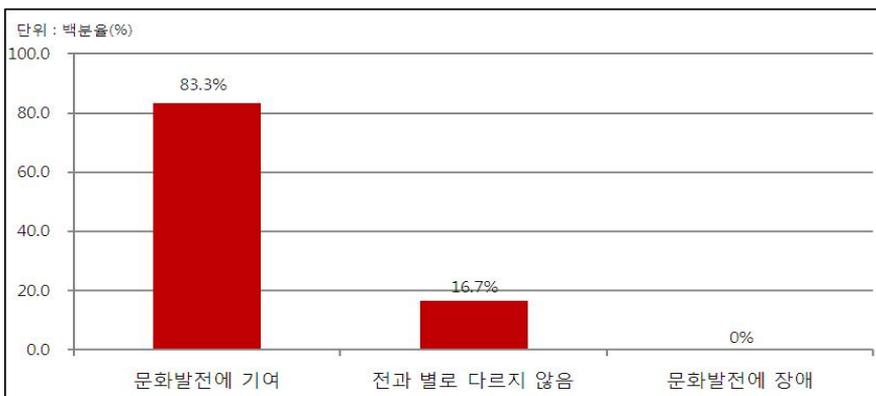
[그림 3-9]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효과

-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8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립되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는 응답은 16.7%(10명)로 나타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문화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한 명도 없었음.
 - 문화계 전문가는 다수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효과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50	83.3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	16.7
오히려 문화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0	0.0
합계	60	100



[그림 3-10]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효과

□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는 ‘문화’의 개념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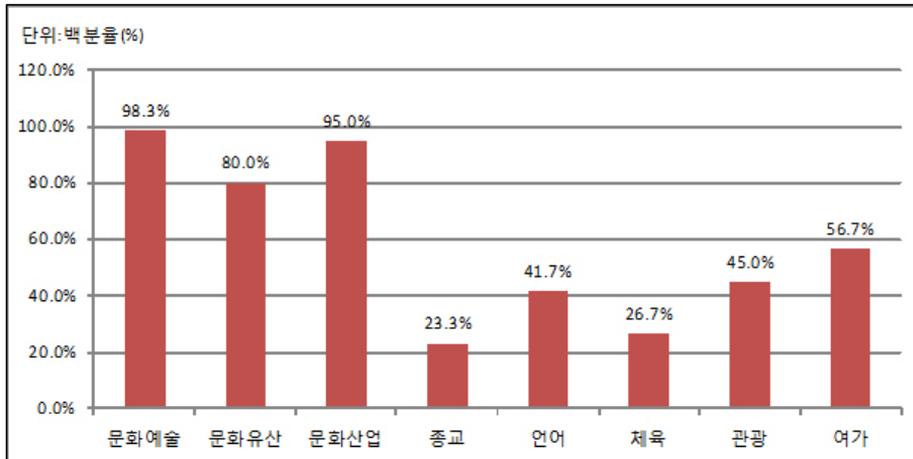
○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문화’의 개념적 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체의 98.3%(59명),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95.0%(57명),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80.0%(48명)이 ‘문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그 외 여가(56.7%), 관광(45.0%), 언어(41.7%)의 순서를 보였고, 종교(23.3%)와 체육(26.7%)은 매우 낮게 나타남.

〈표 3-43〉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는 ‘문화’의 개념적 범위

항목	문화 예술	문화 유산	문화 산업	종교	언어	체육	관광	여가
빈도(횟수)	59	48	57	14	25	16	27	34
백분율(%)	98.3	80.0	95.0	23.3	41.7	26.7	45.0	56.7

주1) n=60, 중복응답



〈그림 3-11〉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는 ‘문화’의 개념적 범위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정책 내용

○ ‘문화기본법’ 제정안 제8조와 제9조에 제시된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

어야할 주요 정책 내용의 비중에 대해 질문하여 1순위 응답만 집계한 결과,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이 31.7%,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2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하위 아홉 항목은 모두 0.0%로 응답이 한 건도 없었음.

〈표 3-44〉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1순위 집계)

순위	항 목	빈도(명)	백분율(%)
1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19	31.7
2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17	28.3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8.3
4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6.7
4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6.7
6	문화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3	5.0
6	문화예술의 진흥	3	5.0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3.3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	1.7
9	국어의 발전과 보전	1	1.7
9	문화산업의 진흥	1	1.7
12	문화·여가시설 등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0	0.0
12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0	0.0
12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0	0.0
12	문화 복지의 증진	0	0.0
12	여가문화의 활성화	0	0.0
12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0	0.0
12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0	0.0
12	지역문화의 활성화	0	0.0
12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0	0.0
	합계	60	100.0

- 같은 질문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재집계한 결과,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17.8%),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3.3%),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12.8%),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11.7%),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10.6%)의 다섯 개 사항은 10%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3-45〉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1~3순위 종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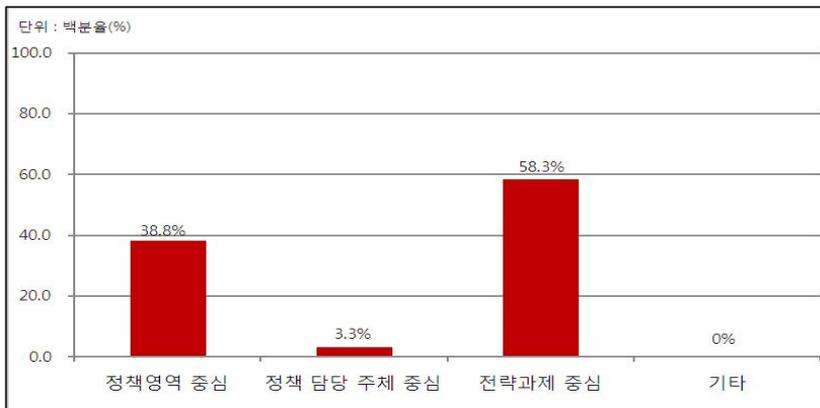
순위	항 목	빈도(명)	백분율(%)
1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2	17.8
2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4	13.3
3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3	12.8
4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1	11.7
5	문화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9	10.6
6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6.7
7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10	5.6
7	문화예술의 진흥	10	5.6
9	문화산업의 진흥	6	3.3
10	문화 복지의 증진	5	2.8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5	2.8
12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3	1.7
13	문화·여가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1.1
13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1.1
13	국어의 발전과 보전	2	1.1
13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2	1.1
17	여가문화의 활성화	1	0.6
17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	0.6
19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0	0.0
19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0	0.0
	합계	180	100.0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구성 방식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과제의 분류 방식(구성 방식)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전략과제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35명)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38.8%(23명)로 나타남.
- ‘정책 담당 주체 및 기관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명)에 불과

〈표 3-46〉 문화진흥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류방식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문화유산정책, 문화정책, 문화산업정책, 예술정책, 제도기반 등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구분	23	38.8
문화체육관광 실/국, 문화재청, 타부처 등 정책 담당 주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구분	2	3.3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그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35	58.3
기타	0	0.0
합계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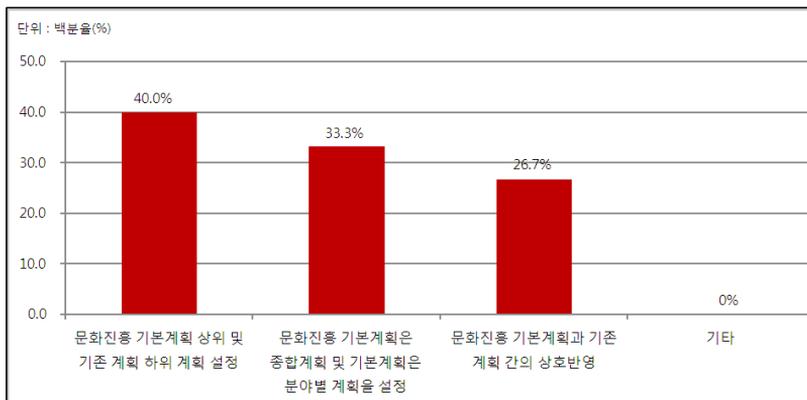


[그림 3-12] 문화진흥 기본계획 정책 과제 분류방식

-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
- 향후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분야별 계획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한 결과,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상위 계획’으로 설정하여 ‘분야별 계획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용’해 나가도록 한다는 응답이 40.0%(24명)으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분야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응답도 33.3%(20명)나 되었고,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상호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호반영’해 나가도록 한다는 응답도 26.7%(16명)나 되었음.

〈표 3-47〉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관계 설정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기존 계획을 하위계획으로 설정하여 기존 계획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용	24	40.0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기본 계획은 분야별 계획으로 설정하여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의 내용을 반영	20	33.3
모든 기본계획은 각각이 독립적인 정책적 지향을 갖는 계획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기존 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에 적합한 방향과 내용을 상호반영	16	26.7
합계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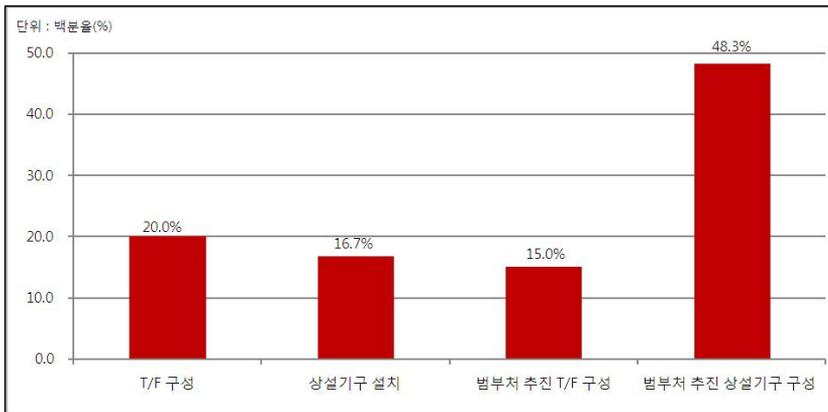
[그림 3-13]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관계 설정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부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까지 담당’하는 방안이 과반에 가까운 응답률(48.3%)을 보였음.
 - 그 외 세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20.0%(12명), 16.7%(10명), 15.0%(9명)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정책 전문가 대다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8〉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T/F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연도에 한시적으로 운영	12	2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까지 담당	10	16.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부처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T/F를 구성하여 계획수립연도에 한시적으로 운영	9	1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부처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까지 담당	29	48.3
합계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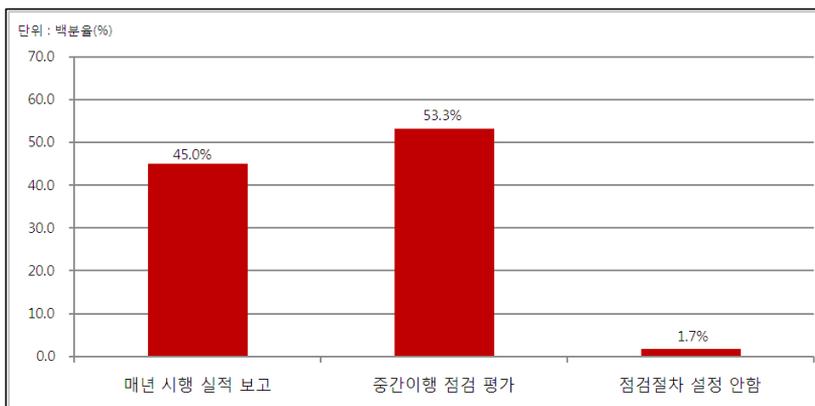
[그림 3-14]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방식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방식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계획 시행 3년차에 중간이행 점검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53.3%(32명), ‘사업 담당부서에서 매년 시행 실적을 보고한다’는 응답이 45.0%(27명)로 비슷하게 나타남.
- ‘별도의 이행 점검 절차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1명)에 불과하였음.
 - 이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기관 등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표 3-49〉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방식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사업 담당 부서에서 매년 시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27	45.0
계획시행 3년차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간이행 점검을 위한 평가 실시	32	53.3
별도의 이행 점검 절차를 설정하지 않음	1	1.7
합계	60	100



[그림 3-15]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방식

□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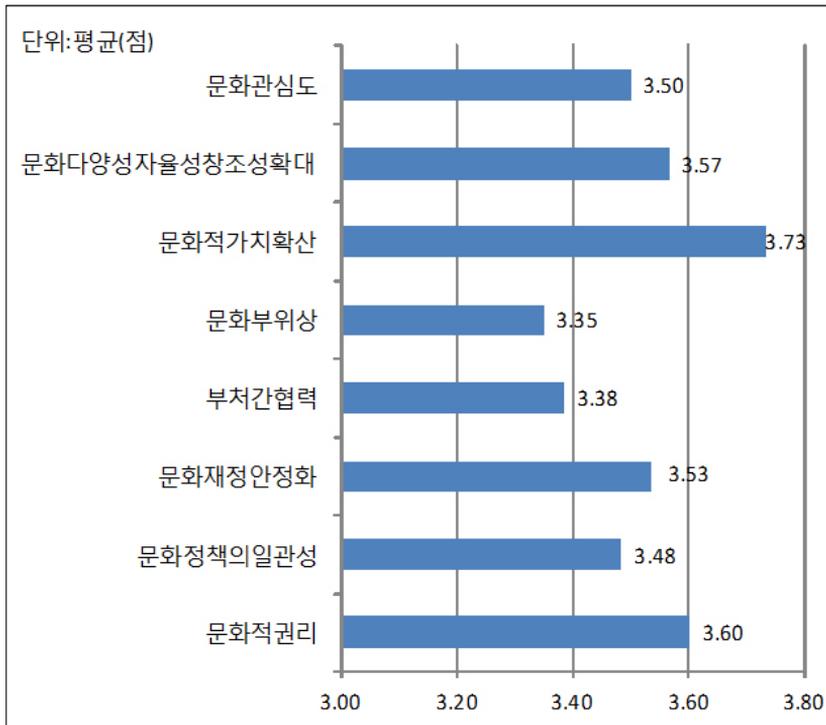
- 「문화기본법」 제정안 제8조에는 5년마다의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1년마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 구분에 대해 서술형으로 질문한 결과 48명이 응답하였음.
- 유사 내용을 통합하여 주요 응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은 총론적 개념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행계획은 세부추진 계획으로 예산 및 제도가 수반되어야 함.
 - 기본계획은 국가 정책에서 문화 분야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5년 단위이므로 기본계획의 방향성이 1년 단위의 시행계획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 그동안 문화 분야 계획이 일관된 방향성 없이 수시로 바뀌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잡아줄 필요가 있음. 다만, 보수 진보 등 이념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격변하는 상황에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 있음.
 - 국가의 문화정책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면,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국가 문화정책 비전속에 5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과 전략과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맞추어 시행계획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필요
 -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비전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계획은 비전을 실행하는 구체적 사업 중심의 계획으로 수립
 -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실질적 실행안 및 업무 분장, 예산 계획, 평가계획을 제시
 -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매년 평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 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액션플랜의 성격을 갖도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만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계

획의 이행평가 등을 참조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아야 함.

- 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 및 실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시행계획의 부분적정화(suboptimization) 역할 필요. 단, ‘계획’과 ‘문화’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속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은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시행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하되 핵심과제의 best practice를 지향해야 함. 또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방향성에의 수렴과 기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핵심과제의 기한 내 달성을 위한 R&R(Role&Responsibility)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이 갖는 독선적 속성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이 되지 않도록 설계·운영·관리하는 일이 ‘문화진흥’의 가치가 국가적 아젠다로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함.
 - 문화 분야에 있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랄 경우 전시행정으로 흐르기 쉬움. 기본계획을 중심에 놓고 각 기관의 시행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종합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해 보임.
 - 원칙적으로 본 법안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일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국정기조가 문화융성에 있는 만큼 대통령 소속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구적으로 운영·관리하되 실무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봄. 부처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여지가 적지 않음.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여건상 대통령의 임기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좀 더 자율적으로 하되, 독립성을 위시한 정책 시행으로 개별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로 기본계획은 문화진흥의 방향,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반영하여 실행력 있는 시행계획(예산, 추진 과정 등 포함)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적 기여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8개 항목에 걸쳐 예상 기여도를 측정(5점 척도)한 결과, 전 항목에서 3.5점 내외의 고른 평가를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란 항목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항목에서는 3.3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음.



[그림 3-16]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적 기여도

〈표 3-50〉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적 기여도

항 목	평균(점)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다.	3.60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문화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3.48
정부의 문화 재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될 것이다.	3.53
문화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해질 것이다.	3.38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내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3.35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3.73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확대될 것이다.	3.57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3.50

주1) n=60

주2)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 제언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자유 제언을 받은 결과 모두 48명이 응답하였음.
- 응답 내용을 유사 중복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범부처간 추진이 필요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 기초적인 문화예술(문학/무용/전통문화/미술/음악)이 튼튼해야 산업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파급이 커질 것이라 생각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의 협치가 필요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핵심은 지속적인 추진과 일관된 방향성이라 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한정하고, 기타의 세부적인 정책사항은 하위 관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지나친 관여, 간섭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희망함.

- 언어적 규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념과 성격 규정 그리고 아우트라인을 협소하게 그리지 않았으면 함. 문화적 논리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임.
- 미래 우리나라 국가 발전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 문화진흥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량만을 고려한 수동적이고 제한적 계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면 함.
- 현재 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장의 수요 공급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각종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 있는 정책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방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진흥’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에 맞는 비전이 잘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음. 그리고 문화진흥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계획 수립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음.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계획에 대한 성과를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창의적이나 결과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임.
- 정권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존 정책 방향이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 잘 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새로 지원하거나 육성 발전해야 할 부분들은 독려하는 방식 필요
-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이 전제된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면이라 보는데 진흥계획이 수립된다면 다소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될 것이 우려되나 이 또한 감안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면 점진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문화 ‘진흥’이 아니라 ‘육성’이 되는 계획이 되기 바람. ‘진흥’은 펼쳐 일어남이란 뜻이고, ‘육성’은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한다는 의미임.

-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역에 반영되는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함.
 -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효성을 담보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통일 이후까지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규정했으면 함.
 - 정책 수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고 민간기구나 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면 지원보다는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범부처간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획이 필요하며 항구적인 정책 실행이 될 수 있는 초기의 틀을 잘 잡아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단일 부처 중심의 기본계획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범부처간 국가 단위 문화정책 기초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지나치게 산업적 효용성 관점에서 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각 정책 분야별로 혹은 기관별로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정책에 비추어 추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전문가들 간에 공론화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임.
 - 각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 정치적 입장, 이념, 사회적 가치의 차이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보의 장 필요
 - 지금까지 ‘창의한국’, ‘새예술정책’ 등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면 새로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①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 ②문화진흥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

속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 필요, ④ 민간,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등임.

3. 설문조사 시사점

- 문화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서 참조할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높은 응답률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은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 국가 문화정책의 전반적 방향 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부처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까지 담당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진흥의 방향비전·전략 등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계획으로, 그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반영하여 세부과제 중심의 실행계획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문화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예측되었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대한 기여도 높게 예측되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①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 ②문화진흥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③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 필요, ④민간,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음.

- 각 문항마다 대체로 다수 의견을 보인 부분을 참조하여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계획 수립 추진 체계에서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범부처 상설 기구’ 설치 문제는 관계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이므로 중기 과제로 검토 필요

제4장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법정계획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의 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문화’란 「문화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의의 문화의 개념을 토대로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진흥’이란 국가 정책 등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의 상태를 지금보다 발전적인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예술 창작의 진흥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권리의 신장도 문화진흥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진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발굴하여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범부처 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행정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문화진흥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함.
 -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행정에 제한되어 있었음.
 - 문화 가치의 확산으로 여러 부처에서 문화진흥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화된 형태로 추진

- 되어 투입 대비 효과가 높지 않았음.
-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지향하는 「문화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의 진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여 정부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진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범부처 법정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계획 내용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나 계획안의 심의확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추진 기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과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갖는 가칭 ‘국가문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서 전략적 방향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 역대 정부마다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추진되었으나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문화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문화정책이 정권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의 장기성(장기적 일관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설계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 구체적인 시행 사업에 대한 계획화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현하도록 역할 분담 필요
- 넷째,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비롯한 문화적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로 보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그

- 가치가 스며들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단순히 정부 부처의 문화진흥 관련 업무를 담은 ‘정책 바구니’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화를 향하여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키우며 확산시켜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함.
 - 다섯째, 문화진흥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문화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의 정책 추진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함.

2. 계획 수립의 목표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문화기본법」 제정 목적의 정책적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몇 개의 주제로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둘째,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환경의 조성
- 셋째, 문화 행정의 종합화 및 지속성 실현
- 넷째, 문화를 활용한 경제 발전 및 사회적 통합 실현
- 다섯째, 문화 간 소통과 교류의 활성화

제2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및 구성 체계

1.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

가. 중앙행정기관과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 범위 또한 문화기본법상 ‘문화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해야 함.
 - ‘시행계획’의 경우 계획의 범위는 기본계획과 동일함.
 -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문화의 범위도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

〈표 4-1〉 「문화기본법」상 ‘문화’의 정의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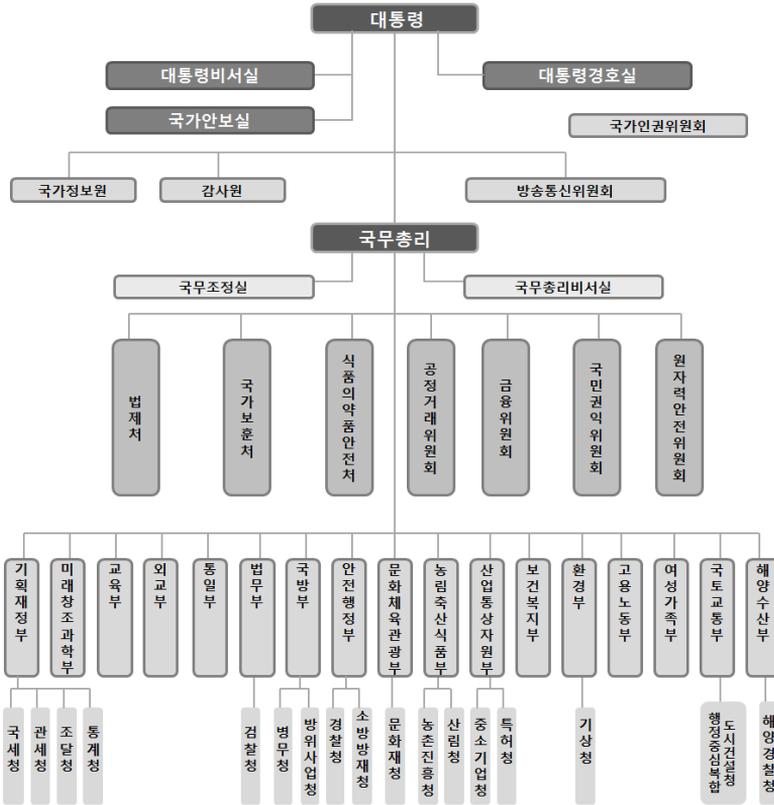
-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행정 영역 가운데 체육과 관광, 국정홍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재청 소관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체계상 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는 중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미디어

- 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의 업무영역임.
- 여기에 ‘여가정책’을 매개로 한 일부 체육과 관광정책도 문화정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행정영역 가운데 문화 분야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세 분야로 구분 가능

〈표 4-2〉 문화정책의 영역 구분

구분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조직 단위	문화재정책국, 문화재 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종무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국
정책 영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통문화 보존 및 재창조	국어, 문화복지, 여가문화, 예술문화, 문화교육, 문화시설, 문화경관,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통일문화, 종교문화	콘텐츠산업, 미디어산업, 문화자원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이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문화 관련 정책이 있는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의 50개이며, 이 가운데 문화정책 관련 계획이나 사업이 있는 경우가 「문화기본법」 제8조에 언급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 중앙행정기관 기구표(2013)

나.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범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여야 함.
 - <표 4-3>과 같이 법안에 명시된 항목은 모두 20개에 이룸.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0개 항목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국가 문화진흥의 방향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여 과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문화 분야의 범위가 넓고 이미 매우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실행되고 있

으므로 각각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 범주화하는 일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까다롭지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조항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
제8조 제3항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 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이외 다른 부처 소관 문화정책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다른 부처 정책 영역 가운데 문화진흥 관련 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진흥 정책 가운데 다른 부처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즉,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담길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 주체에 따라 살

해보면 부처 단독과제와 부처 간 협력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을 제외한 다른 부처 문화정책의 경우에도 해당 부처 단독으로 시행하는 문화진흥 정책과제와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4-4〉 타부처 문화정책 영역 및 부처 간 문화 분야 협력사업

부처명	타부처 문화정책 영역	부처 간 협력사업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산업정책, 과학과 예술의 융합정책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교육부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예술교육정책(예술 고등학교, 예술대학 등), 창의인재정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예술 강사),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 학교도서관 보급, 학교 공간의 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정책관
외교부	문화외교정책, 개도국 문화 꿈나무	한국어 보급 사업, 문화예술 ODA, 한국문화 보급 사업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정책과, 문화예술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
통일부	통일문화정책, 남북문화교류정책	민족문화유산 교류, 거레 말큰사전편찬사업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법무부	외국인정책	교정소년원 문화예술교육지원,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방부	군 문화 활동 및 대외문화 행사, 국방문화정책	군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적 병영 환경 조성(MOU)	* 국방교육정책관 문화정책과
안전행정부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시설, 지역축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이모작사업, 농촌문화활동가 상호 교차교육, 한식세계화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 디자인산업정책	산업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한류와 기업 동반 발전, 신산업 발굴·육성, 디자인·인문지식 등 '지식 + 제조' 융합의 창의 산업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창의산업정책, 디자인생활산업과)

부처명	타부처 문화정책 영역	부처 간 협력사업	비고
		화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문화정책	문화관광해설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노인 일자리)	*인구아동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환경부	-	-	
고용노동부		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 예술인 산재보험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여성문화정책, 가정문화정책, 청소년 문화정책	청소년 방과 후 지원 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가족정책실
국토교통부	공간문화정책	건축문화행사, 문화경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해양수산부	-	-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관련된 영역의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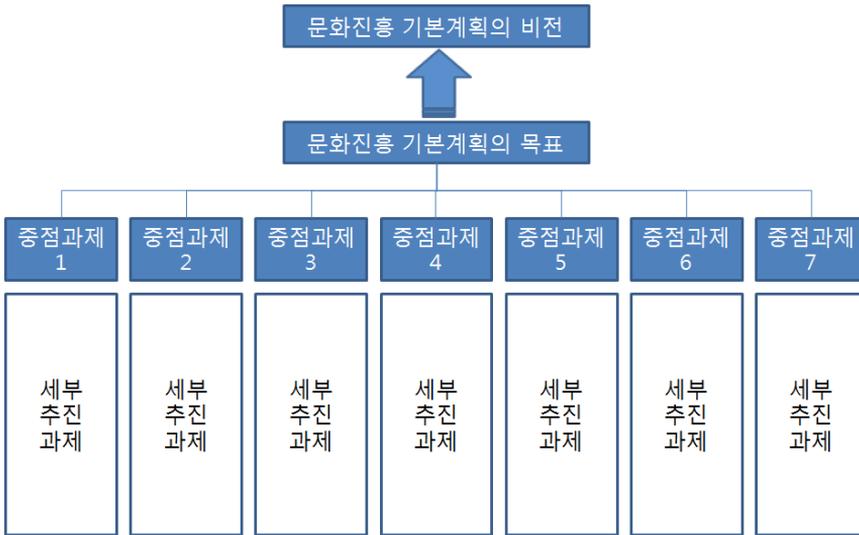
2.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진흥 정책의 비전, 목표가 제시되고, 분야별 정책과제가 제시되며, 그 추진 기반을 함께 다루어야 함.
 - 그런데 문화기본법안에 제시된 내용(<표 4-3>)을 어떻게 재분류할 것인가가 과제
- 문화영역을 문화유산·문화예술·문화산업의 세 분야로 분류하되, 제도 기반 조성에 관련되거나 세 분야에 모두 관련된 분야는 ‘총괄분야’로 분류
 - 「문화기본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의 내용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5〉 「문화기본법」상 문화정책 내용의 분야별 재배치

구분	정책 내용
총괄분야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문화예술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 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문화산업	4. 문화산업의 진흥

- 문화영역별 분류에 의하면 총괄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과도하여 균형이 맞지 않음.
- 따라서 다른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영역에 따른 분류보다는 먼저 중기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그 전략과제에 따라 기본계획의 구성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문화 보존, 문화 창조, 문화 향유, 문화 교류, 문화 산업, 문화 공간, 문화제도 등 7개 주제를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그 하위에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방안 고려



[그림 4-2] 문화진흥 기본계획 구성 체계(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에 맞게 중기 방향과 목표, 그 구현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한 액션 플랜으로 구성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므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작성
 - 세부추진과제의 경우 시행 담당 부처를 명시하되 시행계획의 수립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부처 계획의 성격에 맞게 시행을 담당할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계획이나 향후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세부추진과제의 시행 주체에서는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관여되는 경우 ‘협력사업’으로 표시하되,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주도적인 업무 담당 기관을 특정하여 명시 필요

제3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1.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가.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개요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주체는 국가(문화기본법 제8조 제1항)이며, 계획 수립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문화기본법 제8조 제2항)
- 또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문화기본법 제8조 제3항)

나.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고, 단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의해 수립하도록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 내에서 임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유권 해석 가능
- 통상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계획 수립 관련 상설 기구가 필요하나 「문화기본법」에는 관련 조항이 미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의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임.
 - 또한 법정 기구가 아닌 경우 상설보다는 특정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임시 기구(일종의 TFT)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일지라도 공식성과 공식성을 갖춘 기구가 구성·운영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가칭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또는 ‘문화진흥기본계획위원회’, 이하 필요시 ‘문기위’)를 구성·운영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표하는 방식의 수립 절차를 제안함.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의 역할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주요 정책과제의 조정, 문화진흥 기본계획(안)의 심의, 최종계획(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보고 등 계획수립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
 - 다만 법정 기구가 아니므로 ‘문기위’의 의사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정 권한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심의나 조정 등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그 경우 최종계획안의 확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문기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문기위’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확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분야 실국 대표자, 타부처 문화정책 업무부서(실국단위) 대표자, 문화유산·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 민간 전문가 위촉시 공동 위원장)이 맡고, 위원에는 정부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여 계획 내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편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문화

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본계획 시작 연도의 전전년 말에 ‘문기위’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시작 연도의 전년도 초에 공식 출범하되, 1년 동안 운영되는 한시 기구로 운영(위원의 임기 1년)
 - 문화체육관광부령을 통해서라도 ‘문기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식화된 규정 필요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분과체제로 구성하거나 그 산하에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계획 및 세부추진과제를 검토하도록 운영
- 예를 들면 문화 보존, 문화 창조, 문화 향유, 문화 교류, 문화 산업, 문화 공간, 문화제도 등의 7개 분과로 구성
 - ‘문기위’의 실무분과위원회의 경우 정부 측 위원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
 - 각 분과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책임 집필자를 간사로 배치하여 연구용역과 분과위원회 운영을 매개하는 방안 고려
- 한편 실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마련하며, 용역기관과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의 이원 구조를 통해 최종 계획안을 마련
- 연구 용역에서는 중기 문화진흥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민간 제안 과제, 정부 부처 제안 과제를 취합하여 전략과제별로 구조화
 -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국민 여론 조사,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 운영 필요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기본계획 직전 연도의 월별 일정으로 간단하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1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 마련
 - 2월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문화진흥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배부

- 3월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 4 ~ 6월 : 분과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과제 발굴 및 제출을 통해 분과별 기본계획 과제 초안 마련
 - 7~8월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 중간 점검(과제 심의, 조정)
 - 9 ~ 10월 : 중점과제 설정 및 추가 과제 발굴
 - 11월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표
- 문화계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
 - 분야별 토론회, 계획에 반영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 국민제안센터 운영 등 다각도로 노력
 -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문화융성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적극 수용 검토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은 일부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책사업에의 반영, 예산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찬성 여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역의 시민사회 및 문화단체 등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적극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조건에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계획안을 마련하는 중간단계에서 부처 간 과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자료 협조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진흥 업무담당 부서장(과장급)으로 구성된 ‘문화진흥계획 중앙행정기관 실무조정회의’를

- 운영하여 타부처 문화진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법령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지정하는 방안 도입 검토
 - 중앙행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기구로 활용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정책 및 사업의 연도별 시행 사항을 규정한 계획으로서 예산이 반영된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본계획에서 과제번호가 부여된 세부과제를 그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해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문화진흥 기본계획 ○○○○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는 ①시행계획의 수립 방향, ②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담당 추진 과제(기본계획에서 과제번호가 부여된 정책 또는 사업), ③시행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일정 등), ④시행계획 작성 요령, ⑤시행계획(안) 예시 등을 담아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①전년도 추진 성과, ②세부사업 내용 및 일정, ③소요예산(재원 구분) 및 근거, ④사업 추진 체계, ⑤사업 추진시 유의점, ⑥계획연도 이후의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반영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과제별 시행계획 작성 요령과 작성 예시(2쪽 분량)를 제공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관 차원의 문화진흥 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

자를 정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함.

- 각 기관 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지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별 시행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합한 이후 기관간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며, 그 경우 각 기관 문화진흥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실무조정회의’를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별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기관간 조정을 거쳐 계획연도 1/4분기 안에 전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월 안에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계획 전년도 11월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20○○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송부
 - 계획 전년도 12월~계획 연도 1월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 과제별 시행 계획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
 - 계획 연도 2월~3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합한 과제별 시행계획을 엮어서 종합 보고서로 재구성(이 과정에서 각 기관 사이의 실무조정회의 개최)
 - 계획 연도 4월 : ‘제○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20○○년 시행계획’의 공표 및 통보

라. 계획 수립 추진 체계의 정비

-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타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계획 내용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나 최종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정의 권한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문화기본법」에는 관련 내용이 미비함.
- 늦어도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의 3년차에는 「문화기본법」 개정

을 통해 가칭 ‘문화진흥위원회’ 등의 상설 기구를 설치하거나 앞서 언급한 가칭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야 함.

2.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동되어 운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을 해당 과제(정책이나 사업)의 이행 정도를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
- 다만 개별 과제의 이행 정도만이 아니라 정책 효과의 측정이나 문화진흥 기본계획 전반의 이행 정도 및 평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 과정을 필요로 함.
- 기본계획 시행 4차년도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한다면, 5차년도에 차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그 외 시행계획 등 세부과제별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

제5장 ●●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제8조 제2항과 제3항 제11호임.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한 제8조 제2항
 - 둘째, 제8조 제3항 제1~10호의 규정 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계획 내용의 추가에 관해 규정한 제8조 제3항 제11호

〈표 5-1〉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

문화기본법

-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같은 「문화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점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는 점
- 그런데 「문화기본법」에는 제8조 제2항 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 기본계획’의 사례를 보면,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다른 조항에 계획과 관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수립 참여 방식, ②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협조에 관한 사항, ③계획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계획안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⑤수립된 계획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⑥계획 시행의 점검·평가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근거를 담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2〉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 (내용 생략)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는 제7조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이어 제9조에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음.

〈표 5-3〉 「여성발전 기본법」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여성발전 기본법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는 제15조 제3항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제4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4〉 「건강가정 기본법」의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건강가정 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내용 생략)
-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어 기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8조에서는 계획과 관련 시책의 시행 결과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5〉 「국어 기본법」의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국어 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 (내용 생략)

제8조 (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문화기본법」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협의’에 수립 절차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협의’는 법적 강제력이 가장 약한 규정으로서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되 강제성을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또한 심의, 조정, 통보, 보고 등은 법률 조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보다 상위기관(예 국무회의, 국회 등)에 관련된 사항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의무 조항 등을 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할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한 규정은 법 제8조 제2항의 ‘협의’의 수준에 맞추어 구체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그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와 그 안을 조정하고,

심의하여, 확정하는 단계의 절차를 ‘시행령’에 의해 공식화하는 것은 법률안의 규정을 과대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⁴⁾

- 또한 「문화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1호의 경우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의 추가 발생시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이므로 시행 초창기에는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예상되지 않아 ‘시행령’ 제정안에 특별한 내용 추가 요인이 없음.
- 이에 따라 「문화기본법 시행령」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지정, ‘문화진흥 기본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자문 및 조사연구, 확정된 계획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바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시행령 안 제1항)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실무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진흥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시행령 안 제2항)
 - 셋째, 또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연구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설치 필요(시행령 안 제3항)
 - 넷째, 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시행령 안 제4항). 계획 내용에 지역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만 지역계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에 명시할

4)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 시 「문화진흥 기본계획」(안)의 심의, 조정, 확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필요는 없음.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문제는 별도의 법리 검토 필요

〈표 5-6〉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안)①

제○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진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문화진흥 시행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 ‘문화진흥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제8조 제5항임.
- 「문화기본법」 제정안 제8조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이하 ‘문화진흥 시행계획’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5-7〉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시행계획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가운데 「문화기본법 시행령」 위임 조항은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8조 제5항임.
- 따라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해야 할 내용은 제8조 제5항과 관련된 사항임.
- 「문화기본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다른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관련 시행령 사례를 보면, 시행계획 관련 작성 지침 관련 사항, 계획안의 심의·조정·확정에 관한 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여성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5조, 제5조의2를 통해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5-8〉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소관 여성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시행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표 5-9〉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의 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담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에는 ①시행계획의 수립 방향, ②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담당 추진 과제, ③시행계획 수립 세부 절차(일정), ④ 시행계획 작성 요령, ⑤시행계획(안) 예시 등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안 제1항)
 - 또한 「시행령」에는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기본 사항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안 제2항)
 - 「시행령」에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과 관련을 조항을 포함하여 이행 점검(또는 성과를 평가)을 제도화할 수 있음.(시행령 안 제3항, 제4항) 다만, 법안에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항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필요

〈표 5-10〉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안)②

제○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안)②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소관 문화진흥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또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또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조항을 추가 설치 필요
- 협조 대상 기관에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 또한 법안에 ‘협조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필요
 -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 시 관련 조항 추가 검토 요망

〈표 5-11〉 계획수립 협조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안)③

제○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문화진흥 관련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

결론 및 제언



-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은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해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법정계획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소관 업무 범위만이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진흥 관련 업무 범위까지 포괄하여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여 문화진흥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
 - ‘문화진흥 시행계획’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확정하여 공표한 문화진흥 관련 정부 정책 과제를 연도별로 시행하는 세부 실행계획으로서 과제별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종합화된 계획으로 발표
- 이 연구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성격,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 및 구성 체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 윤곽을 제시하였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른 정책 분야 기본계획 사례와 문화 분야 법정계획 국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연구 결과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국가 문화진흥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확장·공표된 세부추진 과제의 연 단위 시행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제시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기본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에 제시된 20개 항목을 모두 포괄
 - 정책 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문화진흥의 업무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포괄
 -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가칭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에서 계획의 방향, 과제의 선정 및 조정, 최종계획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계획을 확정하여 공표(계획안 초안의 작성은 전 문연구기관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마련)

-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된 문화진흥 세부추진과제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합하여 계획연도의 1/4분기 안에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연도의 4월에 공표
-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 국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본법」에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안의 심의 및 조정, 최종계획안의 확정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범부처 국가계획으로서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따라서 향후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기본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미비한 법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확정할 상설적 법정 기구 설립 필요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률 규정 필요
-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문화진흥(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을 통한 문화국가 형성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단행본 및 정책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금재호 외 16인(2000),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세훈·박영정·정정숙·허은영(2007), 『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박영정·이동연·이주형(201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향자(2009),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관광부(2001),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 문화관광부(2006),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연구』
- 문화관광부(2007),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 문화재청(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
- 문화체육관광부(2008),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08~2012년)』
- 문화체육관광부(2008),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09),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2009~2013년)』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2),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 문화체육관광부(201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 문화체육부(1996),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 보건복지가족부(2009),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위원회(201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수립계획』
- 여성가족부(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여성부(2002),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200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 여성부(2008),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정(판)』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102) 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윤소영(2008),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렬(2004),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011),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2013), 『문화융성 시대 국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9), 『문화발전 10개년계획 기본개념』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교육부, <http://www.moe.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산업통산자원부, <http://www.motie.go.kr/>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외교부, <http://mofa.go.kr/>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환경부, <http://www.me.go.kr/>
일본 문화청, <http://www.bunka.go.jp/>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Park, Young-Jeong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and its Implementation Plan are nation-official plans by establishing and enforcing article 8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is study shows the outline of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s character, legal status, contents and establishment procedure,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sted below.

First,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is a middle term plan and is shown on the strategic direction of a national policy for the culture development. And its 'Implementation Plan' is shown on the annual action plan of detail projects approved in the basic plan.

Second, the substance range of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includes all of 20 contents on Clause 3, Article 8 and Article 9.

Third,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Commission' ,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establishes at a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e, sets up a direction of its plans, an adjustment and selection of its tasks, and its final planning. After the commission reports on a proceeded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to the minister of the MCST, the minister of the MCST confirms and announces to the plan.

Forth,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is that 'Korea Cultur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is produced by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and is submitted to the MCST. The minister of the MCST announces on the 'Korea Cultur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in sequence.

Henceforth,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and 'Korea cultur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should need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Korea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and 'Korea Cultur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are able to elevate effectiveness through the improvement of a system on the plan and execution of the Korea culture development.

부 록



부록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지금 국회에는 ‘문화기본법안’이 발의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발의된 문화기본법안 제13조에 제안되어 있는 사업으로 법안에는 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국가계획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중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문화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부디 좋은 의견을 주시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3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연구위원 02-2669-9855

현재은 연구보조원 02-2669-9849

■ 문화진흥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일 선택)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 선생님께서는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단일 선택)

- ①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②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 ③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오히려 문화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문3. 선생님께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 다루는 ‘문화’ 의 개념적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 ① 문화예술 ② 문화유산 ③ 문화산업 ④ 종교
⑤ 언어 ⑥ 체육 ⑦ 관광 ⑧ 여가

문4. 다음은 ‘문화기본법안’ 제8조와 제9조에 제시된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 담아야 할 주요 정책 내용입니다. ‘문화기본법’ 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문화진흥 기본계획’ 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3순위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②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③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⑤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⑥ 문화·여가시설 등의 조성 and 활용에 관한 사항
⑦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⑨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⑩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⑪ 국어의 발전과 보전
⑫ 문화예술의 진흥
⑬ 문화산업의 진흥
⑭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⑮ 문화복지의 증진
⑯ 여가문화의 활성화
⑰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⑱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⑲ 지역문화의 활성화
⑳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문5. 선생님께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을 구성할 때, 정책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단일 선택)

- ① 문화유산정책, 문화정책, 예술정책, 문화산업정책, 제도기반 등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구분
② 문화체육관광부 실/국, 문화재청, 타 부처 등 정책 담당 주체(기관)를 중심으로 한 구분

- ③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그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 ④ 기타 ()

문6. 현재 문화정책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 기본계획(또는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 수립된다면 이러한 분야별 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선택]

국어발전 기본계획,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문화산업의 중. 장기 기본계획, 영화진흥 기본계획,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재 기본계획,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기본계획

- ①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기존 계획을 하위계획으로 설정하여 기존 계획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용해 나가도록 한다.
- ②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기존 계획은 분야별 계획으로 설정하여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 ③ 모든 기본계획은 각각이 독립적인 정책적 지향을 갖는 계획이므로,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기존 계획은 상호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계획 수립 시점에 적합한 방향과 내용을 상호 반영하면 된다.
- ④ 기타 ()

문7. ‘문화기본법안’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추진 체계로 다음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단일 선택]

-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TF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연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을 담당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까지 담당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부처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TF를 구성하여 계획수립연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부처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까지 담당한다.

문8.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일 선택]

- ① 사업 담당 부서에서 매년 시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다.

- ② 계획 시행 3년차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간 이행 점검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③ 별도의 이행 점검 절차를 설정하지 않는다.

문9. 국회 계류 중인 문화기본법안에는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외에 각 기관에서 작성하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기본계획 : ()

*시행계획 : ()

문10. 선생님께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 수립·시행되면, 그 시행 결과 기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다.					
10-2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문화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10-3	정부의 문화 재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될 것이다.					
10-4	문화 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행정 업무 처리가 원활해질 것이다.					
10-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내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10-6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10-7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확대될 것이다.					
10-8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문1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점에 대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한 줄 의견도 좋음]

■ 마지막으로 조사 관리와 통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선생님의 문화계 활동 경력은 대략 몇 년쯤입니까?
() 년

Q2. 선생님의 문화계 활동 분야는 다음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 ② 문화유산 ③ 문화산업
④ 기타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영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홍 기 원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연구보조

이 유 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현 재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인 박 광 무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3년 12월

발 행 일 2013년 12월

인 쇄 인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450-0 93300